

2014-04

기본연구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승철 · 황용진 · 황인평

Pending issue research

Basic research

Commissioned research

Policy research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주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4-04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승철 · 황용진 · 황인평

발 간 사

제주지역에서 농업 등 1차산업은 GRDP의 17.9%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비중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경제의 유지 및 활성화 차원에서도 다양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업구조와 대외적인 환경이 변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에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농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농업법인의 설립은 그동안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최근 2010년 이후부터는 농업법인의 신규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981개가 있고, 제주에는 693개가 있습니다.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이 육성됨에 따라 농업기계화의 촉진, 농업특정연구사업 지원, 영세농가의 안정된 전업 등 농업의 구조개선은 물론, 큰 틀에서는 협업적이고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 농업법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헌고찰을 통한 농업법인 정책 동향 및 외국선진사례 파악을 비롯하여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제주지역 농업법인 통계 분석, 경기지역 선진 농업법인 현장 방문 조사, 제주지역 농업법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제주지역 농업법인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법인은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첨병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고, 스스로도 엄연한 영리추구의 경영체인 이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공 영 민

연구요약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특히 농산물의 수입증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제주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에서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농기업가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제주지역의 농업법인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본 연구는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 농업법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주농업의 위기극복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음

본 연구의 내용은

- 제주지역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분석
- 농업법인 의견 조사 및 육성 필요성 도출
- 제주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제주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제언 제시

II.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과 해외사례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농업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s)은 농업관련 사업체로서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생산구조가 점차 기업화, 전문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여 만들어진 법적 경영체임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하여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조합 형태로 된 영농조합법인과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영농조합법인은 주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유통, 가공, 또는 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 대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농업법인제도의 골격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조합원의 이익증대)	기업적 농업경영(법인의 이익증대)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발기인수·출자자 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발기인 2~50인(유한책임)과 사원 1인이상 주식회사: 발기인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임대, 경영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현금·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3/4 이하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1주당 1표(주식회사) 구좌당 1표(합자 합명 유한회사)
사업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소규모 관계시설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제도적으로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짐

- 농업법인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조건 이외에 농업법인의 설립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음

농업법인 사업의 운영 형태는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 나눌 수 있음

- 출자자개별운영은 형식적으로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별 농가가 각자의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이라 볼 수 없음

농업법인 사업체의 업종은 크게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우리나라 농업법인 현황

통계청의 전국 농업법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업법인은 전년도인 2011년 10,867개보다 19.5%(2,114개)가 증가한 12,981개로 집계됨

전국 농업법인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2,728개(전체의 22.3%), 전북 1,712개(14.0%), 충남 1,504개(12.3%), 경북 1,429개(11.7%), 경기 1,304(10.6%), 경남 1,129개(9.2%)순이며 제주 693개로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전국전체 법인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분포를 보면, '1억원 미만' 법인수가 가장 많은 4,051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억원 미만' 이 2,394개로 23%, 그다음 '20~50억원 미만' 이 1,043개로 10%, '10~20억원 미만' 927개로 9%, '100억원 이상' 이 363개로 4%, '50~100억원 미만' 이 71개로 1%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 농업법인당 매출액은 16억3900만원으로 집계됨

3. 해외 선진국의 농업법인 정책

독일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사법상의 법인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함

- 개인경영체는 1인 사업자로서 의결기관이나 감독기관이 필요 없고 경영주가 독자성을 갖고 운영에 모든 책임을 가짐
- 인적회사는 법인세 부가가 되지 않고 이윤은 구성원에 분배하며 민법상의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영농조합¹⁾이 이에 속함
- 사법상의 법인은 무한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자본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혼합형회사가 있음

프랑스는 1960년대 유럽에서 농업부문에 농업법인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로서,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농업법인제도를 도입

- 가족농을 법인화해서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농업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의 유한책임으로 농업경영체가 가지는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계농을 양성하고 있음
- 1인 농업경영체와 가족 형태의 농업경영체 법인이 크게 증가하여 프랑스를 농업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 1973년 청색신고에 의한 법인 과세제도 신설, 1993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01년 재개정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양도 제한 조건으로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제도가 마련되었음

일본 농업법인의 특징은 가족경영에 의한 법인화(1호 1법인)를 장려하는 추세임

- 일본 농업법인의 특징은 가족경영에 의한 법인화(1호 1법인)임. 가계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식함양, 농지의 분할상속 방지, 영농 후계자의 경영권 확보 및 유연한 경영승계를 실현하고 있음

4. 국내 선진사례 조사

우리나라 농업법인 가운데, 매스컴에 소개되었거나 차별화된 성공사례 3건을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1) 등록조합 형태의 농업경영체로서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함

- 경기도 양평군 소재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인, 그린팜영농조합법인과 양주시 소재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은 모두 나름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성공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표 2〉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성공요인

법인명	차별화된 성공 요인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제품의 차별화 - 새싹채소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조직의 차별화 - 산촌의 공동체적 구성원 합심
청솔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유통의 차별화 - 생산의 네트워크 및 친환경 매장 구축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의 경영상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정적인 소비 수요를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었음
- 둘째,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지원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셋째, 농가는 생산과 품질개량을 전담하고 법인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 넷째, 지역에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복지가 향상되고 있음
- 다섯째, 법인체 경영은 낮은 수준의 경영관리로 법인의 성장에는 한계가 예상되고 있음. 원자재 구입(지출)이 전체 경비의 70~80% 수준으로 높음.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9년 98억원, 2013년 72.4억원의 법인매출이 있어도 순이익은 거의 제로 상태임
- 여섯째,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사한 경쟁업체의 등장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봉착하고 있음

Ⅲ.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및 조사

1.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 2012년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모두 693개에 달함
- 2001년에 농업법인 100개(영농조합법인 93개, 농업회사법인 7개)가 설립한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94개, 2010년 415개, 2011년 554개, 2012년 693개로 급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527개로, 2001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2010년 한 해 동안 172개, 2011년 95개, 2012년 79개씩 각각 증가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붐을 이뤘음을 알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2012년 166개로, 2001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2010년 한 해 동안 47개, 2011년 48개, 2012년 58개씩 크게 증가하였음

2012년 운영 중인 농업법인 693개 중에 출자자공동운영 335개, 대표자단독운영 311개를 차지하고, 개별운영법인은 47개로 전체 6.8%를 점유함

2012년 농업법인의 농업생산법인은 233개로 36%를 차지하고, 농업생산이외 법인 413개로 64.9%를 점유하고 있음

<표 3> 사업유형별 법인수

계	농업 생산	농업 생산 이외	농업생산이외				
			가공업	유통업	농업서 비스업	농업서비 스업(위탁 영농)	기타
646	233 (36%)	413 (64.9%)	93	223	23	1	74

1)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현황

2012년 총 출자법인 646개²⁾에 총출자수는 5,489명이며,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농업인 4,824명, 비농업인 595명, 생산자단체 14명, 기타법인 56명으로 집계됨

출자자 '5~9인'의 법인이 가장 많은 411개로 63.6%를 점유하고, '4인 이하' 140개(21.7%), '10~49인 이하' 79개(12.2%), '50인 이상' 16개(2.5%) 순이며, '9인 이하'의 법인수가 551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85.3%임

2012년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를 보면 전체 646개 법인 중 '1억원~5억원'이 348개(43.8%)로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127개(19.5%), '5천만원 이하' 98개(15.2%), '5억원이상' 73개(11.3%) 순으로 나타남

2)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2012년 출자 농업법인 종사자는 5,166명에 달하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8.0명임. 이중 상시 종사자 3,191명으로 61.8%를 차지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1,975명으로 38.2%를, 이외 외국인근로자도 127명으로 집계됨

2012년 상시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4인 이하' 416개로 64.4%, '5~9인' 151개로 23.4%, '10~49인' 78개로 12.1% 순이며, '50인 이상'의 법인은 1개뿐임

3)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융자금 현황

제주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법인설립 이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수는 279개,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수는 123개에 달하고 있음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조직형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231개, 농업회사법인이 48개로 각각 집계됨

- 정부보조금의 경우 279개 법인이 모두 1,197억원을 지원받아 평균 법인당 4억2,94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음

2) 전체 제주지역 농업법인수에서 출자자 개별운영 농업법인수를 제외한 숫자임

<표 4>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금액 (누계)	법인당 (누계)	법인수	금액	법인당
279	119,792	429.4	123	57,796	469.9

4) 경영경지 면적 현황

제주지역 농업법인 2012년도 경영경지 법인수는 200개에 달하며, 경영경지면적은 경지면적(밭+과수) 2,720ha, 과수 87ha, 목초지 923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2012년 농업법인의 유형별 재배면적은 노지재배면적이 2,816ha로, 총재배면적의 99.1%로 제주도 경영경지면적은 거의 노지재배 경지를 하고 있음

2012년 제주 작물 총재배면적은 2,841ha에 달하며 통계상의 11개 작물별 중 채소작물 1,993ha, 서류 217ha, 두류 135ha 순임

5) 매출액 및 영업이익

2012년 기준 제주지역 농업법인 매출액은 총 8,529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전체 73.9%인 6,304억원에 달하고, 농업회사법인은 23.1%인 2,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법인당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14억 1,800만원에 달함

제주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구성 비율을 보면 ‘1억원 미만’ 이 35.9%, ‘1억~5억원 미만’ 이 25.1%, ‘5억~ 10억원 미만’ 이 11.9%, ‘20억~50억원 미만’ 이 10.4% 순임

2012년 기준 결산법인 598개 중 ‘영업이익 적자’ 271개, ‘1억원 미만’ 268개, ‘1~5억원 미만’ 50개, ‘5억원 이상’ 9개 등으로 나타남

2012년 기준 제주 농업법인당 자산은 12억원, 부채는 8억원, 자본은 4억원 정도임

2012년 전체 매출액을 농업생산 수입과 농업생산외 수입으로 구분하면, 농업생산 수입은 전체 17.7%인 1,510억원에 달하고, 농업생산이외 수익은 82.3%인 7,019억원

2.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조사

제주지역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팩스나 이메일 설문조사 및 직접 법인을 방문하여 설문조사(표본 33부)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 : 2014. 4. 16 ~ 2014. 5. 20

농업법인의 설립목적은 묻는 질문에 ‘농산물 가공판매’ 응답이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영규모 확대’ 21.2%, 기타가 9.1% 순으로 나타남

농업법인의 사업별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농축산가공이 48.5%, 농축산생산 27.3%, 농축산유통이 15.2% 등 순으로 나타남

법인 참여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개별영농과 농업법인 경영에 모두 참여’가 39.3%로 가장 많았고, ‘개별영농은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가 21.4% 등순으로 나타남

농업법인 경영성과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1점: 비관적, 5점: 매우 희망적)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의 성과는 평균 3.56점, 향후 전망은 3.81점으로 3점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농업법인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금부족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25.9%, 경영 및 관리능력부족 11.1% 등 순으로 나타남

농업법인의 향후 6차산업화 의향을 질문한 결과, ‘매우 의향이 있다’가 4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향이 있는 편’이 16.7%, 보통 33.3%, ‘의향이 없다’는 3.3%인 것으로 나타남

Ⅳ.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1.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첫째,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둘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음

셋째,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 가공 등의 서비스사업도 수행할 수 있어 오히려 농업법인 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함

넷째, 농업법인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서게 됨

다섯째, 농업법인의 실태파악 및 등록사항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음

2. 농업법인의 제도개선 방안

농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표 5>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 및 내용

방안	내용
1)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법인유형 등을 감안한 정책 발굴 6차산업화, 미래사업과 연계된 정책 제도화 필요
2) 세제상의 지원제도 강화 및 정비	세제시한 연장 및 지원 무한책임제도를 유한책임제도 개선
3)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시스템	법적 관리기구 제도화 경영정보의 등록 의무화
4) 농업법인체 컨설팅 강화	농업법인체 컨설팅 정책 도입 one- stop 서비스 시스템 구축

3.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건전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이는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임

- 첫째,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바로 고쳐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 단체 농민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 정책화함
- 셋째,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방식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농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인인 상품, 프로세스, 사람의 혁신이 농업법인 혁신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듯이, 주체적 요인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정책적인 측면과 주체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음

〈표 6〉 제주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적 측면	주체적 측면
1) 농업법인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 2) 지역농협과의 협력관계 구축 3) 우수 인적 자원의 양성 및 지도 4) 농업법인협의회 구성 운영 5) 6차산업화 등 창의적 시책 발굴 6) 농업과 비농업연계 법인체 육성 7) 컨트롤타워 구축	1) 비즈니스 전략 정립 2)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3) 유통판매관리 4) 고객관리 5) 조직 및 인사관리 6) 재무 및 리스크 관리

목 차

I. 서 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2
제4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3
II.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국내외 사례	4
제1절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현황	4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농업법인 정책	15
제3절 국내 선진사례 조사	27
III.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및 조사	40
제1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40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및 인식 조사	65
제3절 현황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76
IV.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3
제1절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83
제2절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87
참 고 문 헌	98
부 록	99
ABSTRACT	122

표 목 차

〈표 I-1〉 연구방법	3
〈표 II-1〉 우리나라 농업법인제도의 골격	4
〈표 II-2〉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	9
〈표 II-3〉 전국농업법인 변화 추이	12
〈표 II-4〉 전국 도별 농업법인 현황	13
〈표 II-5〉 결산법인의 매출액별 분포 비율	13
〈표 II-7〉 전국 농업법인 경영상태	14
〈표 II-8〉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15
〈표 II-9〉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	18
〈표 II-10〉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법적 구성형태	18
〈표 II-11〉 프랑스 농업법인의 비교	19
〈표 II-12〉 일본의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비교	22
〈표 II-13〉 일본 농업경영법인의 법인화에 대한 경영상의 이점과 제도상의 이점	23
〈표 II-14〉 2008년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 농림수산식품부	24
〈표 II-15〉 일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내용	24
〈표 II-16〉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성공요인	38
〈표 II-17〉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극복해야 할 과제	39
〈표 III-1〉 제주지역 농업법인수 변화 추이	41
〈표 III-2〉 사업유형별 법인수	42
〈표 III-3〉 연도별 사업유형별 법인 수	43
〈표 III-4〉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 비율	44
〈표 III-5〉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수 변화 추이	45
〈표 III-6〉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	46

〈표 III-7〉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	47
〈표 III-8〉 출자법인 종사자 현황	48
〈표 III-9〉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변화추이	48
〈표 III-10〉 2012년 제주 농업법인 상시종사자 규모별 현황	50
〈표 III-11〉 2012년도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원	51
〈표 III-12〉 2012년도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원현황	51
〈표 III-13〉 2012년도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51
〈표 III-14〉 농업법인의 경영경지 면적 현황	52
〈표 III-15〉 2012년 제주 작물별 재배면적	53
〈표 III-16〉 2012년 제주 가축 사육두수와 판매두수	54
〈표 III-17〉 전국 및 제주의 농업법인 농기계 보유현황	54
〈표 III-18〉 전국 및 제주의 농업법인 시설물 보유현황	55
〈표 III-19〉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55
〈표 III-20〉 경영성과	56
〈표 III-21〉 연도별 농업법인당 매출액 변화 추이	57
〈표 III-22〉 매출액 규모별 구성비율	57
〈표 III-23〉 제주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분포	58
〈표 III-24〉 전국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분포	58
〈표 III-25〉 연도별 법인당 영업이익 변화 추이	59
〈표 III-26〉 제주 농업법인 자산실태	60
〈표 III-27〉 농업법인 경영실태	60
〈표 III-28〉 부채 규모별 법인수	61
〈표 III-29〉 재무제표 작성 법인수	62
〈표 III-30〉 2012년 제주 농업법인 매출액 사업별 금액	62
〈표 III-31〉 농업생산 외 사업매출 추이 및 성장률 비교	64
〈표 III-32〉 농업생산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매출 추이와 성장률 비교	65

〈표 III-33〉 설문응답 농업법인	66
〈표 III-34〉 설문지 질문 내용	66
〈표 III-35〉 농업법인의 설립목적	67
〈표 III-36〉 농업법인의 사업 유형	67
〈표 III-37〉 농업법인의 사업별 매출액 현황	68
〈표 III-38〉 농업법인의 주요 생산 품목	68
〈표 III-39〉 농업법인의 생산품 판매방법	68
〈표 III-40〉 농업법인의 생산품 판매지역	69
〈표 III-41〉 농업법인의 출자금 증액방법	69
〈표 III-42〉 농업법인의 참여방식	69
〈표 III-43〉 농업법인의 필요성	70
〈표 III-44〉 농업법인의 장점	70
〈표 III-45〉 농업법인 설립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도	71
〈표 III-46〉 운영상 애로사항	71
〈표 III-47〉 농업법인 경영성과 만족도	72
〈표 III-48〉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진전여부	72
〈표 III-49〉 경영상 애로사항	73
〈표 III-50〉 농업법인 지원정책사업의 평가	73
〈표 III-51〉 농업법인의 농협 가입 여부	74
〈표 III-52〉 지역농협과의 협력 가능성	74
〈표 III-53〉 농협사업 이용시 만족도	75
〈표 III-54〉 6차산업화 특화단지 참여 의향	75
〈표 III-55〉 농업법인의 6차 산업화 조직 여부	75
〈표 III-56〉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 현황	78
〈표 IV-1〉 제주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87

그 립 목 차

〈그림 II-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10
〈그림 II-2〉 농업회사법인 설치절차	11
〈그림 II-3〉 전국농업법인 변화추이	12
〈그림 II-4〉 결산법인의 매출액 분포 비율	13
〈그림 II-5〉 전국 농업법인 부채 분포	14
〈그림 II-6〉 일본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유형	22
〈그림 II-7〉 선진사례 방문한 농업법인 위치도	28
〈그림 II-8〉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29
〈그림 II-9〉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32
〈그림 II-10〉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36
〈그림 III-1〉 제주지역 농업법인수 변화추이	41
〈그림 III-2〉 사업유형별 변화 추이	43
〈그림 III-3〉 농업생산이외 사업 유형별 분포	44
〈그림 III-4〉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비율	45
〈그림 III-5〉 출자자수 변화 추이	46
〈그림 III-6〉 제주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 변화추이	47
〈그림 III-7〉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변화 추이	49
〈그림 III-8〉 제주 농업인 종사자 수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구성 비율 ...	49
〈그림 III-9〉 2012년 종사자 규모별 법인수	50
〈그림 III-10〉 경영경지면적과 경영경지면적 있는 법인현황 비교	52
〈그림 III-11〉 2012년 제주 작물별 재배면적	53
〈그림 III-12〉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55
〈그림 III-13〉 연도별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57

〈그림 Ⅲ-14〉 매출액 규모별 법인수	58
〈그림 Ⅲ-15〉 연도별 법인당 영업이익 변화 추이	59
〈그림 Ⅲ-16〉 농업법인 경영실태	60
〈그림 Ⅲ-17〉 자본 부채 규모별 법인 수	61
〈그림 Ⅲ-18〉 제주농업법인의 매출 변화 추이	63
〈그림 Ⅲ-19〉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수입(매출 변화 추이)	65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 FTA 확대에 따라 농업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고, 특히 농산물의 수입증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임
- 제주지역에서 농업 등 1차산업은 GRDP의 17.9%를 점유하고 있고, 농업비중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경제의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다양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에서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농기업가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
-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농협과도 연계하여 우수작목반, 귀농 젊은층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협업적이고, 기업적인 농업법인화로의 진전은 매우 필요하다고 함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은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인의 능력에 어느 정도 좌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조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 도입을 위해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해 가족농 형태의 농가를 대체할 수 있는 협업농적, 기업농적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음

- 정부가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실현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하지만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지금,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세·적자·부실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법인의 운영 평가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농업법인의 정책 또한 법인의 육성 여부 및 방향에 대해 법률개정은 이뤄지고 있으나 지엽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데에 그칠 뿐, 일관된 육성정책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법인 제도운영에 있어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의 농업법인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 농업법인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주 농업의 위기극복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음

3. 연구 내용

- 제주지역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분석
- 농업법인 의견 조사 및 육성 필요성 도출
- 제주 농업법인 육성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 제주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제언 제시

4.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 현장방문을 통한 제주지역 내 농업법인 실태 파악 및 분석

- 문헌고찰 및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조사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농업법인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전문가회의를 통한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마련

〈표 I -9〉 연구방법

연구방법	내용
문헌고찰	농업법인 정책 파악 외국선진사례 파악
통계청 자료 분석	우리나라 전체 농업법인 통계 분석 제주지역 농업법인 통계 분석
선진사례 방문조사	경기지역 농업법인 현장 방문 인터뷰
제주지역 농업법인 설문조사	제주지역 농업법인 면접 조사 및 인터뷰

○ 본 보고서의 구성

- 제 I 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연구내용을 정리
- 제 II 장에서는 농업법인 정책 개요와 국내외 정책 및 사례 조사 정리
- 제 III 장에서는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 및 조사
- 제 IV 장에서는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

II.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과 국내외 사례

제1절 우리나라 농업법인 정책 및 현황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1) 개요

- 농업법인(Agricultural Corporations)은 농업관련 사업체로서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생산구조가 점차 기업화, 전문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여 만들어진 법적 경영체임
-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하여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조합 형태로 된 영농조합법인과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영농조합법인은 주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유통, 가공, 또는 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 대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표 II-9> 참조)

<표 II -1> 우리나라 농업법인제도의 골격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조합원의 이익증대)	기업적 농업경영(법인의 이익증대)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수와 출자자 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발기인 2~50인(유한책임)과 사원 1인이상 주식회사: 발기인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현금·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현금·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90% 이하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1주당 1표(주식회사) 구좌당 1표(합자 합명 유한회사)
사업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소규모관계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 농업법인은 제도적으로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짐

- 농업법인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조건 이외에 농업법인의 설립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농업법인의 설치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농업법

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유형에 따라 각각 『민법』과 『상법』에 두고 있음

- 즉, 구성원의 책임은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됨
 -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됨
- 최근 정부는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이 농촌관광, 휴양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2014.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지금까지 농업법인은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전망
 - 또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회사)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끼리 합병·분할을 허용할 방침

2) 농업법인제도 과정과 내용

- 1990년을 전후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 특히 농업에도 기업과 같은 조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1989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농 이외의 기업적 농업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부응하여 1990년에 농업법인제도는 도입되었고, 그 이후 1993년과 1994년, 1999년에 『농어촌발전조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의

해 2차에 걸쳐 수정되었음

-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였음
-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 2006년 12월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등록제 사업 추진방안 확정 시행(법 제41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 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영체는 농업인 등의 인적, 농지정보, 농축산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시설 등의 생산수단 정보를 자율신고방식으로 등록토록 하는 제도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등록
- 200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수정되었음(식품산업업무이관)
 -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설립 목적과 발기인 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제한 또는 비농업인 출자자의 출자액 비율과 권리 제한, 농업법인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해산명령과 청구, 농업법인의 설립 출자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외 준용하는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09년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획기적인 농업 경영체 지원 근거가 마련됨. 주요내용은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에 담겨져 있음
 -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9]

-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1.11.22]

3)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등 지원정책

- 농업지원정책은 1990년, 1994년, 1995년, 1996년에 각각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음
- 또한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 실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고,
 -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실적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연리 5%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음
 -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을 카드로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와 농협, 축협 등에 비치하고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도 및 경영상담 등을 강화하였음
 -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농림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음
-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 등 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음
- 세제지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간에 차이가 없음

- 다만 농외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200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것만 다름

<표 II -2>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 내용

구분		세제지원내용
국세	법인세	◦ 농업소득세(작물재배소득) 전액면제(2015.12.31.까지) ◦ 농업 외 소득(대통령령이 정한 소득) 감면 (2015.12.31.까지) - 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2014.12.31.까지) ◦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2014.12.31.까지)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2015.12.31.까지)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조합원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소득세	◦ 농업 외 소득 - 영농조합원: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 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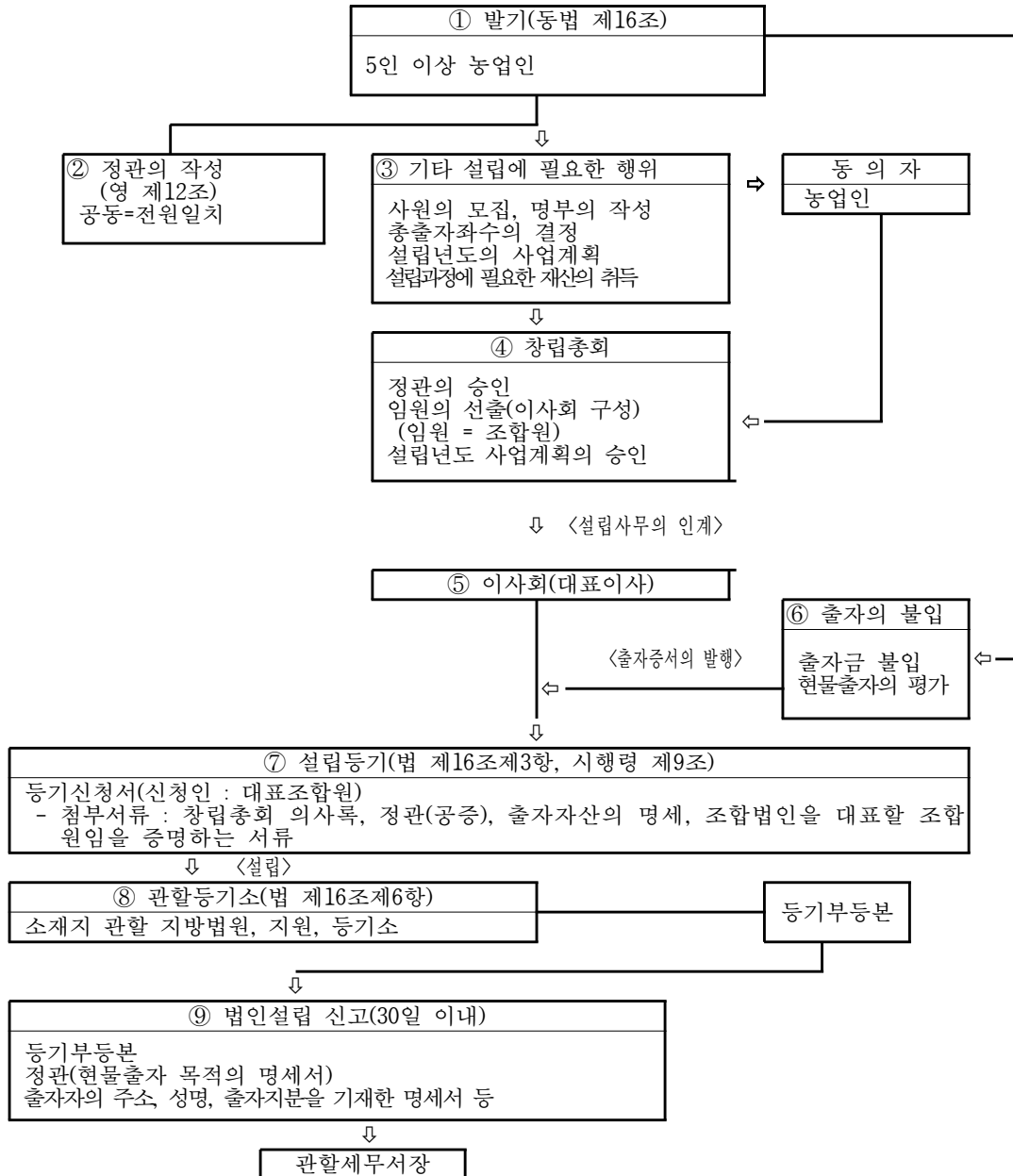
4) 농업법인 설립절차

○ 농업법인은 대략 10단계 절차를 걸쳐 설립됨

- ①발기 → ②정관작성 → ③기타설립에 필요한 행위 → ④동의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 ⑤창립총회 → ⑥이사회 → ⑦출자의 불입 → ⑧설립등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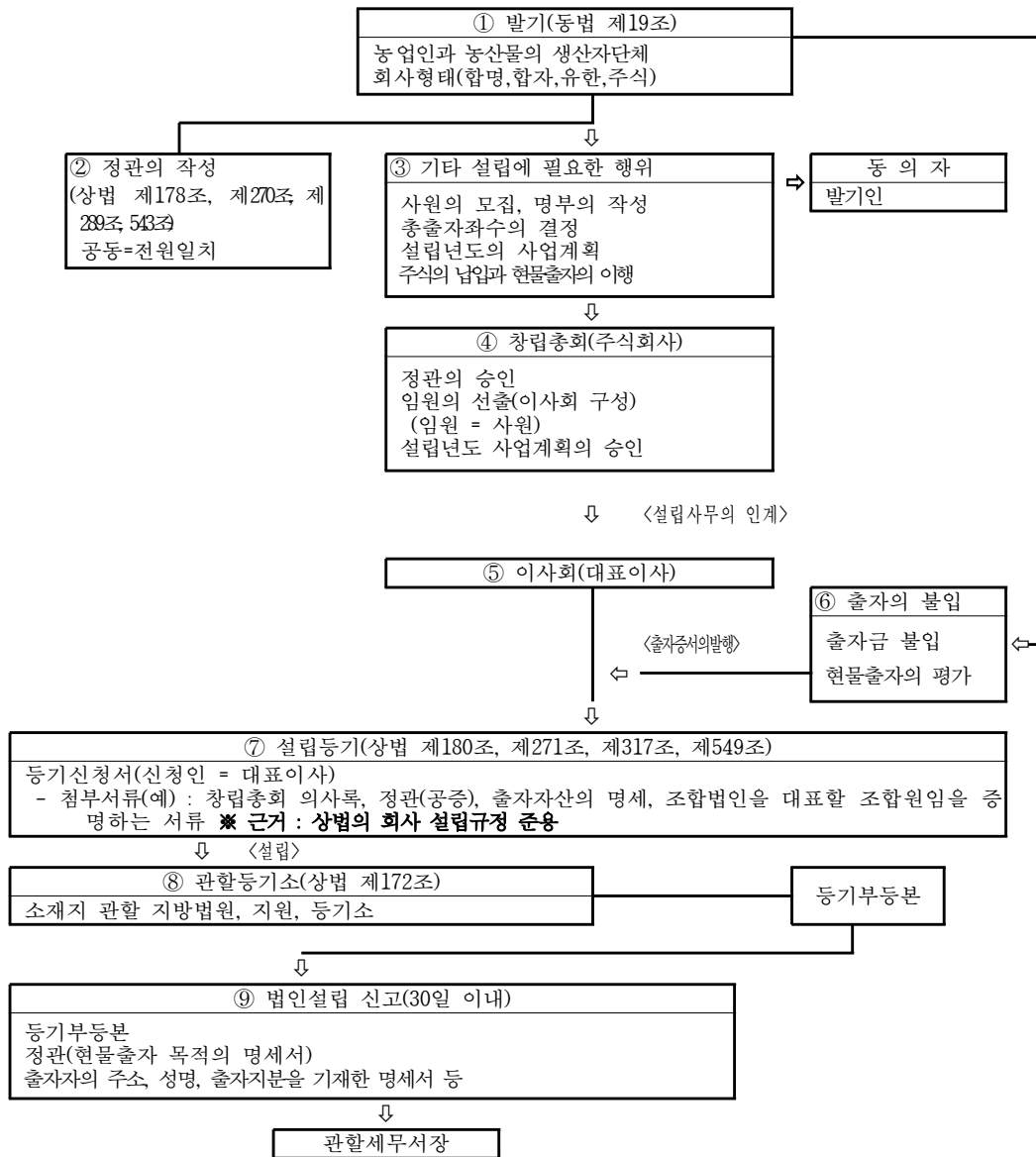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지분의 확인서) → ①관할등기소 → ①법인설립
신고(30일 이내) 관할세무서장

<그림 II -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II -2>농업회사법인 설치절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농업법인 운영 형태 및 업종

- 농업법인 사업의 운영 형태는 출자자공동운영, 대표자단독운영, 출자자개별운영으로 나눌 수 있음
 - 출자자개별운영은 형식적으로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별 농가가 각자의 영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이라 볼 수 없음

- 농업법인 사업체의 업종은 크게 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가공 및 유통판매 사업체는 증가하고, 증가세를 보이던 농업생산업과 농업서비스업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우리나라 농업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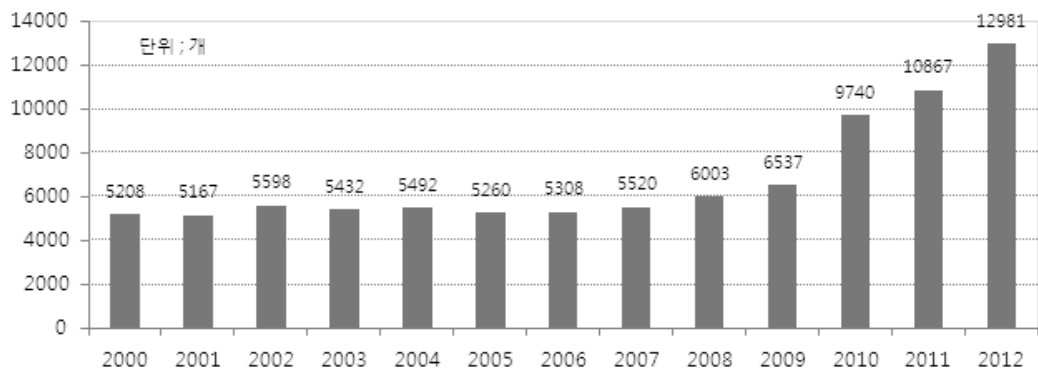
1) 전국 농업법인수 변화 추이

- 통계청의 전국 농업법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농업법인은 전년도인 2011년 10,867개보다 19.5%(2,114개)가 증가한 12,981개로 집계됨
 - 전국 농업법인 증가율을 2000년(5,208개) 기준하여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국 농업법인 12,981개는 약 1.5배가 증가한 것이며, 2000년~2012년간에 연평균 증가율은 11.6%임

<표 II -3> 전국농업법인 변화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5,208	5,167	5,598	5,432	5,492	5,260	5,307	5,520	6,003	6,537	9,740	10,867	12,981
영농 조합 법인	3,852	3,919	4,315	4,274	4,425	4,293	4,409	4,624	5,075	5,597	8,107	8,724	10,023
농업 회사 법인	1,356	1,248	1,283	1,158	1,067	967	898	896	928	940	1,633	2,143	2,958

<그림 II -3> 전국농업법인 변화추이



- 전국 농업법인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 2,728개(전체의 22.3%), 전북 1,712개(14.0%), 충남 1,504개(12.3%), 경북 1,429개(11.7%), 경기 1,304(10.6%), 경남 1,129개(9.2%)순이며 제주 693개로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전국전체 법인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4> 전국 도별 농업법인 현황 (단위 : 개,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인수(개)	1,304	944	803	1,504	1,712	2,728	1,429	1,129	693
비율(%)	10.6%	7.7%	6.6%	12.3%	14.0%	22.3%	11.7%	9.2%	5.6%

2) 결산법인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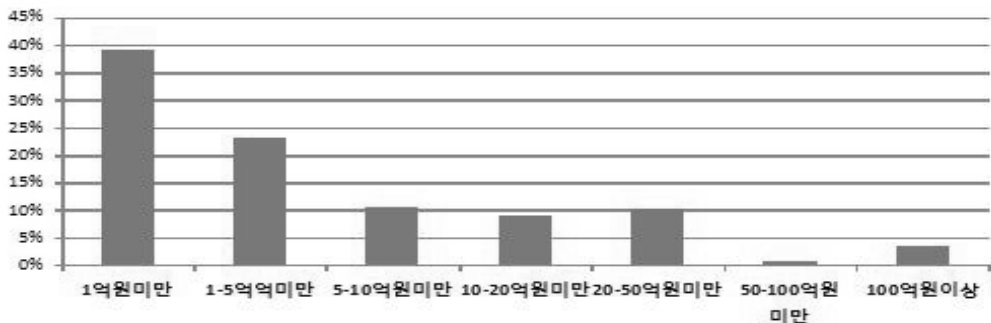
○ 결산법인수는 2012년 기준 10,352개(미결산 2,629개)에 달함

- 매출액 분포를 보면, ‘1억원 미만’ 법인수가 가장 많은 4,051개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억원 미만’ 이 2,394개로 23%, 그다음 ‘20~50억원 미만’ 이 1,043개로 10%, ‘10~20억원 미만’ 927개로 9%, ‘100억원 이상’ 이 363개로 4%, ‘50~100억원 미만’ 이 71개로 1%를 각각 점유하고 있음

<표 II -5> 결산법인의 매출액별 분포 비율

결산법인수	1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352	4,051	2,394	1,103	927	1,043	71	363
비율	39%	23%	11%	9%	10%	1%	4%

<그림 II -4> 결산법인의 매출액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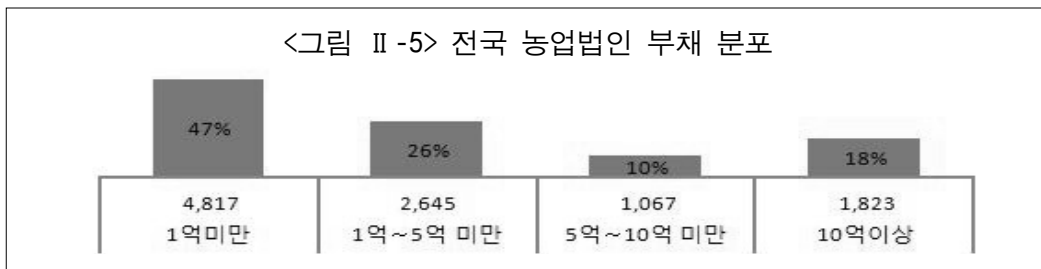
- 2012년 기준 전국 농업법인당 매출액은 16억3900만원으로 집계됨
 - 영농조합법인은 12억5400만원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갑절 많은 27억 2000만원으로 조사됨

3) 부채 분포

- 결산법인 중 부채 분포를 살펴보면 ‘1억원 미만’ 이 4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1~5억원 미만’ 이 26%, ‘10억원 이상’ 이 18%, ‘5~10억원 미만’ 이 10% 순으로 나타남

<표 II -6> 전국 농업법인 부채 분포

	결산법인수	1억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이상
계	10,352 (100%)	4,817 (47%)	2,645 (26%)	1,067 (10%)	1,823 (18%)



- 경영상태를 보면, 영업이익 ‘1억원 미만’ 이 4,666개(45.0%), ‘1~5억원 미만’ 1,015개(9.8%), ‘5억원 이상’ 이 188개(1.8%)로 나타났으며, ‘적자’를 보인 법인수도 전체의 43.3%에 해당하는 4,483개를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 -7> 전국 농업법인 경영상태

조직형 태별	결산법인 수 전체	2012			
		적자	1억원미만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계	10,352	4,483	4,666	1,015	188
영농조 합법인	7,636	3,260	3,626	655	95
농업회 사법인	2,716	1,223	1,040	360	93

제2절 해외 선진국의 농업법인 정책

1. 독일

- 독일 국토면적의 약 39.8%가 ‘농촌지역’ 이고 이 지역 거주자의 17.5%가 농업인구 임
 - 농업인구는 2009년 기준 915,130명으로 이 중에 81.6%가 가족농임
- 과거 독일은 전업 농업경영체에는 집중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반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탈농이나 조기 은퇴를 유도하였음
 - 하지만 1980년대 고도성장이 주춤하면서 농촌 마을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인식변화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의 농가와 겸업농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음
- 독일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사법상의 법인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함
 - 개인경영체는 1인 사업자로서 의결기관이나 감독기관이 필요 없고 경영주가 독자성을 갖고 운영에 모든 책임을 가짐
 - 인적회사는 법인세 부가가 되지 않고 이윤은 구성원에 분배하며 민법상의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영농조합¹⁾이 이에 속함
 - 사법상의 법인은 무한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자본이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혼합형회사가 있음
 - 농업경영체 수가 약 395,000개(2005년 통계)로서 개인경영체인 농가는 지속적으로 줄고 인적회사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 -8> 독일의 농업경영체 구성

연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개인 경영체	450,400 (95.4%)	423,700 (94.8%)	396,700 (94.3%)	371,400 (93.9%)
인적회사	16,100	17,800	18,700	18,800

1) 등록조합 형태의 농업경영체로서 우리나라의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함

연도		1999년	2001년	2003년	2005년
법인	사법상	4,500	4,500	4,500	4,600
	공법상	900	900	700	700
계		471,900	446,900	420,600	395,500

자료 : BMVEL, Agrarpolitischer Bericht 재인용

- 독일농업경영체는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경영체를 말하며 농산물을 유통 및 가공에 종사하는 경영체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에 속하지 않음
 - 독일에서 조세상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활동이 조세상의 농림업에 속해야 함. 일차적으로 작물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의 활동이 되고, 축산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때 농림업 활동이 됨
 - 농업경영체 농림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산업세와 구입이나 판매 부가가치세(9%)는 정산에 의해 면제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세는 특별공제부분을 적용함
- 독일에서는 농업법인경영체를 일반법인과 구별되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농업경영체가 『상법』상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혹은 『협동조합법』상의 등록조합으로 등록하면 농업법인경영체가 됨
 -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등록을 이행하고 있으나 사업체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농업관련 4대 보험²⁾에 가입하여야 함
- 독일의 영농조합은 정책적 지원과 같은 외부지원을 의존하지 않고 있음. 실제 영농조합은 법인체이므로 조세상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함
 - 독일의 협동조합체계에서 영농조합은 7인 이상의 영농희망사들이 농업경영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심사협회에 가입하면 라이파이젠협회의 농업생산조합이 됨
 - 협동조합협회는 소속된 회원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부합되게 설립되었는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경영상태는 정상인지를 심사

2) 산재보험, 농업연금보험, 농업의료보험, 농업요양보험

2. 프랑스

- 프랑스는 국토면적의 약 64.6%가 농촌지역이며, 1999년 이후 2006년 사이에 연 평균 0.7%씩 증가해 전체 인구 인구증가율과 동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농업인구는 2008년 기준하여 78만7,000명으로 전국 경제활동 인구의 3.0%로서 이중 81.8%가 가족농임
- 유럽에서 농업부문에 농업법인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로서, 장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농업법인제도를 도입
 - 1960년 이전에는 소농 중심으로 농업경영조합을 결성하였고, 1962년 농업기본법보완법에 의한 각종 농업경영조직 육성 규정화, 1972년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창설, 1985년 영농유한회사(EARL) 제도가 창설되었음
 - 199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 인한 보조금 축소로 농가수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농업법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1996년 농업근대화법을 제정하여 토지 및 자본투자, 경영이양, 사회보장, 생산물 시장출하 등에서 회사나 법인형태의 영농활동육성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가족농을 법인화해서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농업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의 유한책임으로 농업경영체가 가지는 부채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계농을 양성하고 있음
 - 1인 농업경영체와 가족 형태의 농업경영체 법인이 크게 증가하여 프랑스를 농업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
- 농업경영체는 개인경영체(농가)와 회사형태로 구분하고, 유형은 회사이지만 법인이 아닌 임의회사의 형태도 존재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는 일반적으로 민사회사법의 규정을 받지만, 상업회사법에 의해 설립할 때에는 상업회사법을 준수하여야 함
- 농업인은 세제, 사회보장, 회사경영구조와 기능, 출자수준, 발전전망, 경영이양 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를 민사회사와 상업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표 II -9> 프랑스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개인경영	회사경영		
		비법인	법인	
			유한책임 1인 회사	2인회사
민사회사법	개인경영체 (농가)	임의회사	유한농업경영회사	공동농업경영단 농업경영민사회사
상업회사법	개인사업자	-	유한책임1인경영체	유한책임농업회사 주식회사

자료 : 박석두외(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p.83)

- 2005년 농업경영체 총 34만 6천여 개소 중에 개인경영체(농가)가 215,792(62.3%)이고 회사법인 형태의 경영체가 130,309(37.7%)임

<표 II -10> 프랑스 농업경영체의 법적 구성형태 (단위; 개소,%)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경영체 수	비율
개별농가	275,444	70.0	241,513	65.8	215,792	62.3
회사형태	117,939	30.0	125, 338	34.2	130,309	37.7

자료 : 박석두외(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p.83)

- 농업법인 종류는 <표 II -11>과 같이 공동농업경영그룹(GAEC), 유한책임 농업경영체(EARL)과 농업경영민사회사(SCEA)로 구분하고 있음
 - GAEC(Groupement d'exploitations agricoles en commun): 농업법인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음
 - EARL(Exploitation Agricole a Responsabilite Limitee): 회사법인 형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1인 농업회사법인
 - SCEA(Societe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농업법인중 경영방식과 수익 분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공동조직

<표 II -11> 프랑스 농업법인의 비교

구분	공동농업경영단 (GAEC)	유한책임농업경영체 (EARL)	농업경영민사회사 (SCEA)
법인구성	· 최소2명 최대10명 · 비법인, 성인 · 농업경영인 · 배우자만 구성불가	· 최소1인 최대10인 · 비법인, 성인 · 비농업참여가능 (출자금50%이내) · 배우자 구성가능	· 최소 2인 이상 · 농업인 · 비농업인 · 부부간 구성 가능
승인절차	· 있음	· 없음	· 없음
법인자본금	· 최소 1,500유로	· 최소 7,500유로	· 최소출자 제한없음
책임한도	· 출자자본 2배한도	· 출자자본 이내	· 무한책임
영농상한 면적	· 제한없음	· 10SMI ³⁾	· 제한없음
비고	· 참여농민은 GAEC경영과 농작업에 동시 참여 · 대부분 한 가족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짐	· 부자(父子)가 설립한 GAEC에서 은퇴한 경영주가 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수 있음	· 저리 용자와 보조금 · 농업경영주 자격상실 · 세제변화 · 사회보장혜택 변화

자료: 박석두의(2006)자료를 연구자가 재작성

○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법인 구성원은 개인경영체 구성원보다 낮은 수준의 법률적 지위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함

- 중앙정부나 EU의 농업정책자금은 도농업지도위원회에서 지역 내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농업지도위원회는 도의회, 도농업국, 도세무서, 농업회의소, 농업공제조합, 임노동자대표, 농산물가공업체, 농업협동조합, 농민운동단체, 유통업자, 농업은행(크레디아그리콜), 농지소유자단체, 산림소유자단체 등으로 법적 구성단체와 의석수가 지정되어있음⁴⁾
- 농업지원 정책자금은 보조금과 특별저리융자로 구분하고, 관련 예산은 4개의 기관(FranceAgrimer, ASP, Odeadom, ODARC)이 취급하고 있음

3) SMI(Surface Minimum D'installation)는 젊은 농업경영가구가 최소한의 가계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영농정착면적으로 지역과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큼

4) 프랑스 농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농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온 3개의 농민단체가 있는데, 프랑스 농업회의소, 농업협동조합, 농민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이 바로 그것이다.

-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저리의 청년영농자금으로 청년들에게만 융자하여주는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과 농기구 투자의 경우 대출기간이 48시간 정도로 절차가 간편한 ‘농업정책의 프로세스’ 가 있음
- 농업법인의 세제지원은 투자금액에 대해 5년 동안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농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부동산 보유세가 영구히 면제되며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건축물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여 부채가 있어도 경영에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해 농업경영 과정의 부채 때문에 가게 자체가 몰락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1인 농업경영체와 가족 형태의 농업경영체 법인이 크게 증가하여 프랑스를 농업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

3. 일본

- 일본의 농업법인제도는 1962년에 도입, 1973년 청색신고에 의한 법인 과세제도 신설, 1993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생산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01년 재개정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양도 제한 조건으로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제도가 마련되었음
- 일본 농업법인의 특징은 가족경영에 의한 법인화(1호 1법인)를 장려하는 추세임
 - 가게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식함양, 농지의 분할상속 방지, 영농후계자의 경영권 확보 및 유연한 경영승계를 실현하고 있음
 - 일본에서의 농업법인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법인 형태의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체를 총칭하는 용어임
 - 일본 농림수산통계에 따르면 1965년 당시 농업생산법인이 1,295개가 설립된 이후 1985년 3,168개, 1995년 4,150개, 2005년에는 7,9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법인의 조직형태는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농지의 권리 유무에 의해 농업생산법인과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조직유형은 상법, 유한회사법, 농협법 등 조직법에 의해 규정되며 농지의 권리취득은 농지법이 규제를 하고 있음
- 농업생산법인은 사업 요건, 구성원 요건, 업무집행 임원의 요건의 3가지가 충족할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사업조건은 농업 및 농업관련사업의 매출의 절반을 초과
 - 구성원 요건은 법인의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업무집행 임원의 요건은 농업 및 관련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구성원이 임원의 절반의 과반을 차지하고 그 과반이 6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 등임
- 일본은 농지법과 농협법 개정에 의해 <그림 II-7>과 같이 유형의 특징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음
 - 농업법인은 농지가 필요한 농업생산법인과 농지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농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농사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농업법인의 형태(2008년)는 유한회사 67.0% 농사조합법인 18.0% 주식회사가 13.5% 순임
 - 매출액 규모로는 1억~3억엔 규모의 법인이 전체의 3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3,000~5,000만엔 규모의 법인은 13.0%로 나타남
 - 농사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1호법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2호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⁵⁾
 -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신농정⁶⁾’은 법인화의 유형은 1호(戶) 1법인으로 협업형⁷⁾, 지역공동형⁸⁾, 농협·시정촌 주도형, 혼합형⁹⁾이 있음

5) 1호법인과 2호법인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6) 1992년 6월에 ‘새로운 농업·농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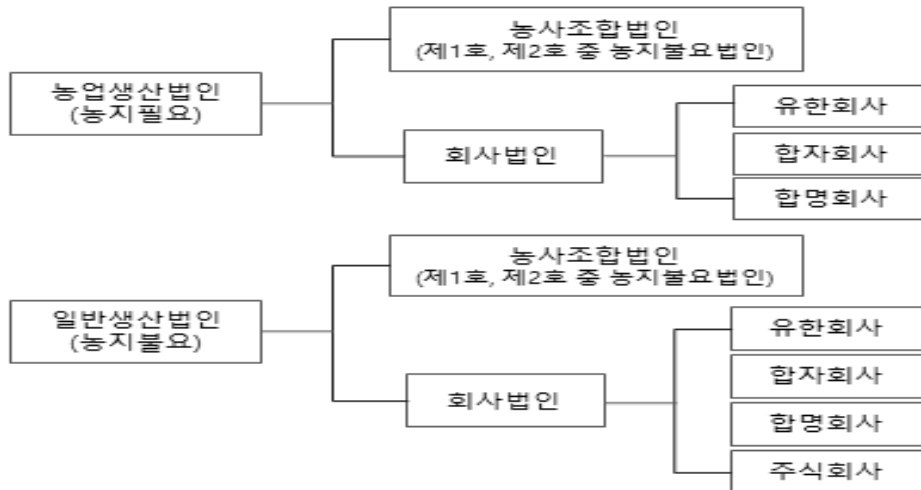
7) 다수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유형

8) 마을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농지·자금·노동력을 제공하는 유형

9) 여러 농가로 법인을 구성하여 일부 농업부문만 법인경영으로 하고 그 외는 개별경영에 맡기는 유형

- 법인경영 의사결정은 농사조합법인은 출자액 규모에 관계없이 1인 1표, 유한회사는 출자 1구좌당 1표로 의결권이 주어지며, 회사법인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동일하게 할 경우 의사결정권이 균등함

<그림 II -6> 일본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유형



자료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

<표 II -12> 일본의 유한회사와 농사조합법인의 비교

구분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
근거법	유한회사법	농업협동조합법
목적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	협업에 의한 공동의 이익증진
법인형태	영리법인=사단법인	중간법인=협동조합
구성원	1인 ~ 50인, 비농업 가능	농업인 3인 이상
출자	자본금 300만엔 이상 1구좌 5만엔 이상	비출자 : 1호법인 출자 : 현물·현금 출자 무제한
의결권	출자 1구 1표(탄력운용가능)	1인1표
등기	법무국에 설립등기	법무국에 설립등기 후 행정청에 설립신고
임원	대표자 1인(비사원 가능)	이사 1인 이상(농업인만 가능)
지분양도	사원총회 불필요	양도, 상속 : 조합의 승인필요
배당	일반 농업인: 출자액에 비례 농업생산법인 : 6% 이내 출자배당 후 종사분량 배당	6%이내, 종사일과 사업이용분량

구분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
준비금	자본의 1/4까지는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1/10 이상 적립	출자총액의 1/2이상까지 잉여금의 1/10 이상 적립
종사자	무제한	조합원이 상시종사자의 1/3이상
책임한도	출자지분 한도의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의 유한 책임

자료 : 농업법인의 한국농업의 활로, 김정호(2012)

- 농업경영을 법인화할 경우에 가족경영의 비교하여 경영상의 이점과 제도상의 이점은 <표 II -13>와 같음

<표 II -13> 일본 농업경영법인의 법인화에 대한 경영상의 이점과 제도상의 이점

경 영 상 의 이 점	경영관리능력 향상	· 경영책임에 대한 자신을 가짐으로 경영자로서의 의식개혁촉진 ·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관리가 철저
	대외 신용 향상	· 계수관리의 명확화, 설립등기, 경영보고 등의 법정의무가 수반하므로 거래상의 신용력 향상
	농업종사자의 복리후생충실	· 공용보험 적용 등으로 농업종사자의 복리증진 · 노동시간 등 취업규칙의 정비, 급여제도 도입에 의한 취업조건의 명확화
	법인 후계자의 원활한 확보와 신규취농자의 수용처 역할	· 법인임원이나 사원중에 유능한자를 후계자로 확보가능 · 취농희망자가 법인에 취업하므로 초기 부담없이 경영능력과 농업기술습득 가능
제 도 상 의 이 점	세제우대	· 소득분배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세경감 · 정률과세의 법인세 적용 · 임원보수의 급여소득화에 의한 절세 · 사용인 경무 임원상여의 손금삼입 · 퇴직급여 등의 손금삼입 · 결손금의 7년간 이원공제 및 환금 · 농용지 이용집적 준비금의 손금삼입
	자금차입	· 융자한도액의 확대 · 자금확대에 대한 보증인의 확보
	농지취득지원	· 농지보유 합리화 법인이 농용지 등을 현물출자를 함으로 부담 경감

자료 :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

- 농업법인의 판매, 가공, 관광을 연계하는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표 II -14> 2008년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 농림수산식품부(2009)

구분	2008년	
	응답자 수(명)	비율(%)
1,000만엔 미만	24	3.1
1,000~3,000만엔	78	9.9
3,000~5,000만엔	102	13.0
5,000~7,000만엔	78	9.9
7,000~1억엔	83	10.6
1억~3억엔	249	31.7
3억~5억엔	70	8.9
5억~10억엔	53	6.8
10억엔 이상	48	6.1
평균	2억 7,054만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재고방안을 연구자가 재작성

- 일본의 농업금융정책은 농업자에게 저리 우대자금의 공급확대를 통해 농업투자의 촉진과 경영구조의 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금융 지원기관은 정부, 금융기관, 신용 보증기관, 보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지원기관은 독자적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조달과 전달체계를 갖고 있지만 지원체계는 매우 복잡함
- 주요 농업정책자금은 일본정책금융공고자금, 농업근대화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Supper-S), 부채정리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표 II -15> 일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내용

농업정책자금		내 용
일본 정책	Supper-L자금 (농업경영기반 강화자금)	·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거치기간 10년 거치 이내 상환기간 25년 이내

농업정책자금		내 용
금융공고자금	농업 Safety net 자금	• 불의의 재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금흐름의 장애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융자하는 장기 운전자금 • 거치 3년 이내 상환기간 10년 이내
	경영체육성 강화자금	• 의욕과 능력을 갖고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자에 대한 융자 • 거치 3년 이내 상환기간 25년 이내로 융자한도는 1억5천만엔(법인 5억엔 이내)
	진흥산촌·과소 지역경영 개선자금	• 법률로 정한 진흥산촌 및 과소지역의 소득안정과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개선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거치 8년 이내 상환기간 25년 이내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	•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시설·기계 등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 거치 3년 이내 상환기간 20년 이내
	특별진흥자금	• 농업인이 농업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특별진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신기술의 도입, 경영의 복합화·시스템화, 독자브랜드 확립, 생산성확립, 생산비절감 등 넓은 범위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거치 3년 이내 상환기간 15년 이내
	자본지원융자	• 신규분야에 도전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의 융자 • 거치 8년 상환기간 18년으로 융자 후 10년 상환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상환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부가됨
	농업개량자금	• 농업경영의 생산·가공·판매의 새로운 부문의 개시, 품질·수량의 향상, 비용·노동력의 절감을 위한 새로운 조직에 무이자 지원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대출 함 • 거치 3년 이내 상환기간 10년 이내
	농업근대화자금	• 민간 금융기관이 농업자 등에 대출해 주고 정부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 자금 • 기본적인 융자한도는 1,800만엔(법인 2억엔)으로 상환기간은 15년 이내
	농업경영개선 촉진자금 (Supper-S자금)	• 저리 단기운전자금 융자로 이용한도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농협신용기금협회에서 무담보 무보증인으로 신용 융자
	부채정리자금	• 경영실패의 농업자가 정책금융 부채의 정리를 원할 경우에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경영체육성강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상환기간은 25년 이내임 • 정책자금 이외의 부채를 정리할 경우에는 융자하여주는 지원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자료: 박준기외(2011), 선진농업금융사례분석, p.50~P.55,를 인용하여 연구자가 재작성함

- 일본 농업법인의 세제지원은 청색신고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제도, 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특별공제 제도, 농업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지역의 토지 등의 과세특례 제도, 농지의 보유·취득에 관한 조세특례 제도, 농업에 대한 사업세·가업소득세의 비과세 제도,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제도, 농업용 기계장치의 설비투자과 관련된 특례제도, 농업에 사용된 석유류의 면세제도, 농사조합법이 분배한 중·분량배당 등의 특례제도가 있음

4. 외국제도의 요약 및 시사점

- 독일은 농업법인경영체를 특수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조세상의 농림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62년 농업법인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로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는 농업제도를 도입함. 199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 보조금 축소로 농가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농업법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개별농가 경영체는 줄어드는 대신에 회사형태의 농업경영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962년 농업법인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가족경영에 의한 법인화(1호 1법인)를 장려하는 추세임. 1965년 당시 농업생산법인이 1,295개가 설립된 이후 1985년 3,168개, 1995년 4,150개, 2005년에는 7,9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판매, 가공, 관광을 연계하는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독일, 프랑스 등의 농업법인제도는 농업법인의 무한책임이 아닌 유한책임만 지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과 일반인에게도 농업법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영위하는 가족농을 더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첫째, 독일, 프랑스의 농업법인 조직은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무한책임 문제와 관리감독기구 부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음

- 농업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하여 부채가 있어도 경영에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해 농업경영 과정의 부채 때문에 가게 자체가 몰락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반면에 현행 우리나라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무한책임 문제와 관리감독기구의 부재 문제 발생
- 독일의 영농조합 조직은 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라이프치겐협회에 소속되고 세부적으로 농업생산조합으로 분류됨
- 프랑스의 농업법인은 유한책임농업경영체(EARL)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나 가족으로 법인 구성이 가능하고 비농업인 전문경영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 감면, 융자한도 증액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상속세를 면제받을 있어 세대간 무상 농업이전이 가능함
- 둘째, 특히 프랑스 및 일본 농업법인제도는 기업농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가족농을 법인화하여 육성하는데 있음
- 일반인에게 농업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영위하는 가족농을 더 육성하려는 것에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농이 아닌 일반 도시민에게 자격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어 난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음

제3절 국내 선진사례 조사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법인 가운데, 매스컴에 소개되었거나 차별화된 성공사례 3건을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 조사일시: 2014. 5.2~5.3
- 조사지역: 조사여건을 감안 편의상 경기도 내 3곳 방문
 - 경기도 양평군 소재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인, 그린팜영농조합법인과 양주시 소재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그림 II -7> 선진사례 방문한 농업법인 위치도



1. 대농바이오영농조합법인

1) 법인개요

- 2003년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설립
 -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업법인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주생산품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아이순, 무순, 적메밀, 특수채소 생산유통
 - 주요거래처 :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웨딩업체, 외식업체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 홈페이지 : www.daedongbio.com
- 2013년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 새싹 생산량 : 800톤
 - 매출액 : 새싹채소 60억원, ‘산삼가득 막걸리’ 10억원
 - 직원 : 70명(20명 장애인 고용)
 - 농장면적 : 66,000㎡(120하우스)

2) 농업법인 연혁 및 성장

- 자본금 1억원으로 시작
 - 2004년, 2005년, 2007년 제주도에서 종자 총 99톤 채종
 - 2005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폴 타라레이 박사초청 세미나 등 연구노력
 - 2007년 나주시지역에서 종자채종(85농가, 약 86ha, 85만톤 채종,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
 - 2008년 나주시와 새싹종자 50만평 채종표 계약
- 새싹사업의 정점을 찍으면서 사업다각화 모색
 - 2009년 ‘산삼가득 막걸리’ 경기농업기술센터로부터 특허기술이전
 - 2010년 ‘산삼가득 막걸리’ 생산판매
- 매출액 : 2004년 8억원, 2007년 39억7900만원, 2013년 60억원(새싹)
 - 초창기에는 정보부족으로 판로개발의 어려움과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많았음

<그림 II -8>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종이상자에서 키울 수
있는 새싹 채소



대농바이오 브랜드
‘해가든’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퇴촌공장

3) 법인 성공요인

-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새싹채소’이라는 ‘제품의 차별화’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유통전문가인 CEO의 강한 추진력, 스타마케팅, 사업다각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우선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차별적인 상품개발로 사업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

- 2003년~2004년 조류독감 대유행으로 육류기피현상과 청정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새싹채소를 상품화하였음
- TV 등 방송과 언론매체도 웰빙이라는 시대적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새싹채소 수경재배 등을 크게 소개함으로써 사업초기부터 매출기반을 다질 수 있었음

○ 가락시장 도매인 경력을 가진 CEO가 유통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생산, 유통, 마케팅 철저한 분업화 및 지속적인 납품처 개발

- 백화점 :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8개소
- 호텔 : 롯데호텔, 신라호텔, 힐튼호텔 및 면세점
- 대형병원 :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산병원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클럽(양재, 창동, 성남, 수원, 일산)
- 외식업체 : CJ 푸드빌, 삼성플라자, 원앤원(주) (주)푸드머스, 신세계푸드,
- 학교급식납품, LG슈퍼, 롯데슈퍼
- 인터넷 홈쇼핑 판매

○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다각화함

- 새싹채소, 베이비채소, 아이순 개발, 새싹비누 출시,
- 개별소비자 증가(40%)에 따른 소포장개발(50g)로 신선도 유지와 재구매 욕구 자극
- 사업다각화로 2010년부터 ‘산삼가득 막걸리’ 생산, 인삼사탕, 산양삼 가공

○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 미국 존 홉킨스대학과의 브로콜리싹의 항암효과 연구 및 마케팅 활용
- 친환경농산물(새싹채소, 베이비)인증, 친환경유기농농산물인증, HACCP, 벤처기업 인증, G마크 인증 등
- 농림기술개발의 공동연구 : 경북대, 중앙대, 이비테크, 경기도농업기술센

터, 삼성 종묘, 현대종묘 등과 공동연구 추진하여 새싹채소 국내 종자비의 비중을 높여감

- 자체 고유 브랜드 ‘해가든’ 개발하여 브랜드 마케팅 구사

○ 스타마케팅의 활용

- 유명연예인 송해의 이미지를 ‘산삼가득 막걸리’ 홍보 및 광고
- 한류를 이용한 ‘인삼가득 막걸리’ 해외수출시장 개발로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수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G-Trade Global 수출상담회, 2013 G-Fair Korea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 직원들의 친절함에 묻어 있는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높은 사기

2.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1) 법인개요

○ 2010년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설립

- 양동면지역 150농가가 생산한 부추를 절삭가공하여 저온냉동 제품화하여 식품회사 납품으로 사업전환하여 100% 비가림 재배로 품질 좋은 부추를 안정적으로 생산가공하고 있음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 종사자 : 생산직 15명 외 사무원직은 자원봉사(조합원 150농가)
- 주생산품 : 비가림 부추를 절삭가공 냉동 제품화하여 외식업체 CJ 등에 공급하고 있음
- 2013년 매출액 : 농가 74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부추냉동가공처리 설비능력은 양동면지역 150농가가 비가림 재배한 20만 톤의 생산량 중에서 5~6톤 처리

<그림 II -9>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그린팜 입구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전경



부추 비가림하우스

2) 법인연혁 및 성장 배경

○ 그린팜 영농조합법인이 위치한 양동면은 전형적인 산촌(山村)으로 고추 농사, 약간의 벼농사 등으로 농가소득이 매우 열악하였으나 1990년쯤 부추농사를 짓기 시작함

- 현재는 가락동농산물시장 부추 수요의 50%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경작면적과 생산력을 확보하여 ‘양동부추’ 주산지로 명성을 얻음
-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20만톤의 부추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음
- 부추농사는 연중 수시로 현금화가 가능하여 농가들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 부추 생산에 합심

○ 농업법인 설립동기

- 부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락동농산물 시장가격 형성이 계절적 요인, 중계인의 농락, 풍작과 흉작의 불안적인 생산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게 됨
- 작목반장을 중심으로 타개책을 모색하던 중 선진농 방문기회에 냉동부추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됨을 알게 되었음
- 이를 계기로 과잉생산된 부추를 가공처리하는 사업구상과 수요처를 개발하는 동기가 되었음
- 냉동부추는 만두소, 라면 등의 식자재로 쓰이는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에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설립

- 기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마을 리더들이 농가들을 방문하여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150농가가 모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 설립
- 냉동부추 가공처리를 위해 가공설비를 주문제작하여 공장설비를 완공함
- 공장부지와 건축물은 행정기관인 양평군의 지원과 협조로 제공됨

○ 강력한 행정지원

- 영농조합법인이 공장을 세우고자 할 때 양평군은 공장 부지와 건물을 구입·건축하여 4년 무상임대 지원함. 4년 후에는 저렴한 임대료 지불기로 약정함
- 군수가 농가대표들과 함께 대형 소비처를 직접 방문 사업을 설명하여 대형수요처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음
- ‘물 맑은 양평’ 브랜드개발로 타 지역 부추가격보다 200원/kg 더 받고 있음

○ 비가람 생산 부추 4~5만톤 냉동부추 가공처리

- 전체 생산량 20만톤 중에서 15만톤은 가락동도매시장으로 출하, 1만톤은 농협에 계통출하하고 있음
- 법인 설립으로 양동면 지역에서 생산된 5만톤의 부추를 처리함으로써 나머지 15만톤 출하시 시장가격 교섭력을 확보함

○ 농가당 연평균 소득 안정

- 냉동부추 가공으로 농가 연평균수입이 5,000만원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음
- 연소득이 억대가 넘는 농가만 4~5 농가에 달함

3) 법인성공요인

- 그린팜 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전형적인 산촌에서 마을 리더의 비전과 지도력으로 기업적인 농업경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조직의 차별화’에 있음

- 그 다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추 한 품목에 올인하는 농가의 성실성, 청정지역 브랜드 마케팅 등을 꼽을 수 있음
- 우선 고추농사와 약간의 벼농사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던 산촌에 1990년 부추재배를 시작한 마을주민들이 친환경 부추 생산에 합심하고,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출하 방식에 동참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냉동부추 생산을 위해 농업법인을 설립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음
- 한 농가당 100만원 한도 소액투자, 동일지분 참여 원칙으로, 양동면 소재 부추재배 150농가가 100%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협동심을 구축함. 부추영농조합법인과 그린팜영농조합의 구성원이 동일하여 농가의 높은 참여와 협동심을 발휘하는 토대 마련
- 과잉 생산량 처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절삭 냉동부추 생산을 창안한 역발상적인 발상
- 마을단위를 벗어나 양동면 전체를 포용하는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하여 가공처리용 재료 확보가 용이
- 조직의 안정화와 신뢰
 - 법인대표는 철저한 선출직으로 3년 임기 보장
 - 부추작목반 마을기금의 투자규정으로 그린팜 영농조합법인에 50% 투자를 규정함으로 강한 조합원 소속감부여
- 생산과 마케팅을 분리하여 전담 책임제 실시
 - 두 개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생산과 마케팅을 분담
 - ‘친환경 양평부추 영농조합법인’은 양질의 부추 생산을 전담하고 ‘그린팜 영농조합법인’은 부추의 냉동가공과 판로를 개척하고 있음
-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지원
 - 양평군을 ‘친환경지역’으로 지정하여 비료, 농약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양평군 전지역을 청정농산물 생산지역을 정하고 있음
 - 퇴비 구입비 지원 실시

- ‘물 맑은 양평’ 슬로건과 청정마케팅으로 가락동농산물 시장에서 부추 제값받기에 일조를 하고 있음
- 지속적인 수요처 확대 개발
 - 농가 설득과 독려로 부추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늘려 가락농산물 시장가격 협상력 강화하고 있음

3. 청송유기농영농조합법인

1) 법인개요

- 1988년 양주 제1농장 준공에 이어 1996년 회원 5인으로 양주유기농작목반으로 출발하였고, 2000년에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 조합원 : 60명
 - 주생산품 :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물류유통전문회사
- 유기농 양채류, 야채류를 전국에서 수집하여 가공포장
 - 2013년 연간매출 : 72억4천만원
 - 생산가동능력 : 양상치 600개 포장/일
- 주요거래처 : 전국 물류센터 3개소
 - 계약재배생산지역 전국 6개권역 37지역
 - 제주지역 : 애월, 구좌, 한림 및 제주농협

2) 법인연혁 및 성장 배경

- 2000년 청송유기농영농조합법인 설립
 - 설립동기: 당시 거래처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반복적인 가격행패에 대응하고 제값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함
 - 2001년 산지물류센터 가동

<그림 II -10>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 전경

‘햇생’ 브랜드

전국재배생산단지

○ 2002년부터 본격적인 법인 운영 시작

- 임대 경작 면적은 줄이고 품목전환과 함께 생산량을 증가하여 가격협상력을 향상하였음
- 재원은 개인농가별 융자금과 경기도청의 정책 지원금으로 조달하였음
- 2003년 ‘자연주의 햇생’ 브랜드 개발
- 2004년 양주저온처리센터 준공
- 2006년 유기재배인증취급인증 2007년 친환경농업대상 유통부문 최우수상 수상
- 2009년 경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몽골리안하우스 지원, 영농기술 등을 지원을 받았음

○ 행정기관과 주변기관의 지원과 협조

- 초기에는 지역농협과 행정기관 소유 물류창고를 무상임대 지원을 받음

○ 주요 거래업체

- 2003년 현대백화점 및 수도권 7개 지점 입점
- 2004년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입점으로 수도권 9개 매장 입점
- 갤러리아 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과 농협 하나로 마트

3) 법인성공요인

-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지역내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유기농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재배계약을 통해 우수 유기농 농산물을 확보하여 친환경 소비처를 확보하는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의 차별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친환경트렌드에 맞는 원료 확보, 생산과 유통을 분리한 전문적인 책임 분담, 조직원의 열정과 단결 등을 꼽을 수 있음
- 우선 내 지역농산물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전국에서 유기농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재배 계약을 함으로써 우수 유기농농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임대경작면적은 줄이고 품목전환과 함께 생산량 증가함으로써 생산량 우위에 따른 유통시장에서 제값받기에 효과가 나타나 매출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개인농가들의 개인별 융자금 마련 등 투자에 대한 의욕과 법인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
 - 경쟁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농가의 협조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와 조합이 상생할 수 있었음
- 전국 유기농 농산물 산지 네트워크 구성·활용
 - 유기농재배 농가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와 조합원간에 신뢰가 강화되었고, 생산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 CEO의 적극성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의 적절한 지원과 협조 유도
 - 법인 설립 초기 지역농협과 행정기관 소유 물류창고 무상임대 등 지원과 협조적인 관계유지
 - 경기도의 정책적인 지원과 각종 지원금 지원
-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역발상 이용
 - 2003년 일본, 홍콩 수출이 경험부족으로 실패한 후 유기농친환경 브랜드 ‘자연주의 햇생’을 탄생시키고 현대백화점 수도권 7대 지점에 입점하는 계기가 되었음

- 까르프 마트 입점을 계기로 프랑스의 친환경 농산물 관리시스템 전수받은 이후에 국내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게 되었음
- 공동대표제 운영과 전문성에 따른 생산, 유통, 마케팅 분담
 - 공동대표를 맡으면서도 유기농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반면에 유통 및 마케팅 부분은 설립초기부터 유통현장을 뛰었던 직원이 전담하는 등 각 구성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각 구성원의 소득은 일정수준에 도달

4. 국내 사례의 시사점

-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은 모두 나름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성공요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표 II -16>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성공요인

법인명	차별화된 성공 요인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제품의 차별화 - 새싹채소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조직의 차별화 - 산촌의 공동체적 구성원 합심
청솔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유통의 차별화 - 생산의 네트워크 및 친환경 매장 구축

- 이들 영농조합법인들의 경영상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정적인 소비 수요를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었음
- 둘째,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지원과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셋째, 농가는 생산과 품질개량을 전담하고 법인은 유통과 판매를 전담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 넷째, 지역에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복지가 향상되고 있음

- 다섯째, 법인체 경영은 낮은 수준의 경영관리로 법인의 성장에는 한계가 예상되고 있음
 - 원자재 구입(지출)이 전체 경비의 70~80% 수준으로 높음
 - 청솔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9년 98억원, 2013년 72.4억원의 법인 매출이 있어도 순이익은 거의 제로 상태임
 - 농가소득은 향상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의 수익은 영세할 우려가 있음으로 장기적으로 이에 대안이 필요함
- 여섯째,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사한 경쟁업체의 등장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봉착하고 있음
 - 경쟁사 구조가 다양하고 경쟁업체간의 출혈 경쟁 상황임
 - 유통의 경우 농협의 큰 경쟁상대가 되어 농업법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대형매장과 유통망을 가진 대자본의 기업들이 농산물 등의 유통을 잡고 있으므로 흡수 통합의 위기에 봉착
- 일곱째, 정부의 정책변화에 민감
 - FTA 등 정치환경변화와 규제완화에 편승하여 유기농 기준이 완화되어 유기농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기업은 값싼 수입산을 선호하여 유기농식자재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음

<표 II -17>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극복해야 할 과제

법인명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대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	새싹채소 시장의 경쟁 심화 경쟁업체 생겨남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냉동식자재 수입 증가 - 만두 등의 부자재 원산지 표시 완화 조치 기인
청솔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감 팽배 -친환경 농산물 소포장 기계화 곤란 -경제업체간 출혈 경쟁 및 대자본에 흡수되는 상황

Ⅲ.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분석¹⁰⁾ 및 조사

제1절 제주 농업법인 현황 분석

- 통계청은 매년 농어업법인 조사(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를 하여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 정책수립과 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조사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설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에 농업법인조사 통계를 게시하고 있음
 - 농업법인조사 통계에는 운영주체 및 사업유형, 출자자, 출자금,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종사자, 사무실 사용여부, 경영 경지면적, 재배면적, 가축 사육 및 판매, 농기계, 농업시설물, 매출액, 재무제표작성여부, 경영실태, 자산·부채·자본규모, 경영성과, 영업이익 등의 통계가 탑재되어 있음

1.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개요

1) 총괄

- 2012년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모두 693개에 달함
 - 2001년에 농업법인 100개(영농조합법인 93개, 농업회사법인 7개)가 설립한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94개, 2010년 415개, 2011년 554개, 2012년 693개로 급진적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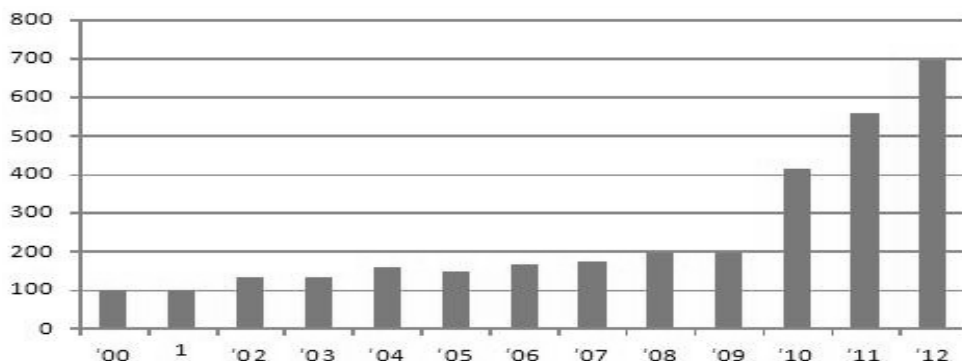
10)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업법인조사 자료 참조. 농업법인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하고, 관할세무서장에서 법인설립 신고한 후에는 행정기관의 업무부재, 관련협회의 부재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오로지 매년 통계청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업법인 조사 자료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2001년 이후 2009년까지의 농업법인 평균 증가율은 55.8%이었으나 2009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매년 평균 증가율은 185.2%로 증가하는 등 최근 2~3년사이 신규 농업법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1> 제주지역 농업법인수 변화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102	100	135	135	158	147	167	172	195	194	413	556	693
영농 조합 법인	95	93	127	127	147	138	156	160	184	181	353	448	527
농업 회사 법인	7	7	8	8	11	9	11	12	11	13	60	108	166

<그림 III-1> 제주지역 농업법인수 변화 추이



-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527개로, 2001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2010년 한해 동안 172개, 2011년 95개, 2012년 79개씩 각각 증가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붐을 이뤘음을 알 수 있음
-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8년간 영농조합법인 평균 증가율은 64%이었으나 2009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증가율이 376%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함
- 농업회사법인은 2012년 166개로, 2001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2010년 한해 동안 47개, 2011년 48개, 2012년 58개씩 크게 증가하였음

-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8년간 농업회사법인 평균 증가율은 48%이었으나 2009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증가율은 1,490%로 최근 급격히 증가함

2) 운영 유형별 법인 수

- 2012년 운영 중인 농업법인 693개 중에 출자자공동운영 335개, 대표자단독운영 311개를 차지하고, 개별운영법인은 47개로 전체 6.8%를 점유함
- 출자자 개별운영법의 조직형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 44개, 농업회사법인 3개임
- 특히 출자자 개별운영의 경우 2001년 27.0%(27/100)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 1.4%(6/413개), 2011년 5.0%(28/556개), 2012년 6.8%(47/693개)로 감소하고 있음

3) 사업유형별 법인 수

- 2012년 농업법인의 농업생산법인은 233개로 36%를 차지하고, 농업생산이외 법인 413개로 64.9%를 점유하고 있음

<표 III-2> 사업유형별 법인수

	계	농업 생산	농업 생산 이외	농업생산이외				
				가공업	유통업	농업서 비스업	농업서비 스업(위 탁영농)	기타
계	646	233 (36%)	413 (64.9%)	93	223	23	1	74
영농 조합 법인	483	187	296	62	168	17	1	49
농업 회사 법인	163	46	117	31	55	6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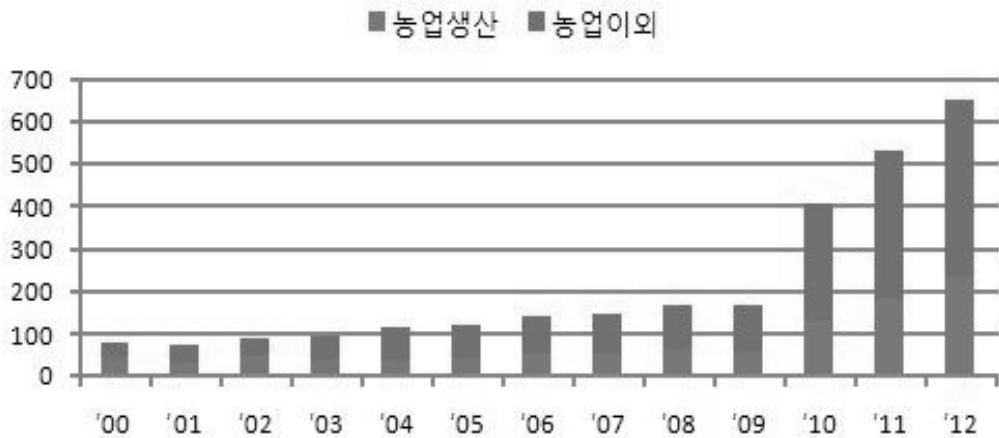
○ 연도별 농업생산 법인수와 농업생산이외 법인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3>와 같음

- 2003년 이후부터 농업생산이외 법인이 전체 농업법인의 60%~70%의 비율로 나타남

<표 Ⅲ-3> 연도별 사업유형별 법인 수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농업 생산	36	29	41	33	33	38	46	47	64	59	133	183	233
농업 이외 /비율	41 /53%	44 /60%	49 /50%	60 /65%	82 /71%	84 /69%	93 /67%	100 /68%	105 /62%	108 /65%	274 /67%	345 /65%	413 /64%

<그림 Ⅲ-2> 사업유형별 변화 추이



○ ‘농업생산이외 사업’ 유형별 분포는 <그림 Ⅲ-3>과 같이 2001년 이후 2009년까지는 농업서비스업 법인 분포가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가장 낮아짐

- 2010년 이후는 유통업과 가공업 순으로 법인 수의 분포가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I-3> 농업생산이외 사업 유형별 분포



2. 제주 농업법인 세부 현황

1)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현황

(1)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수 및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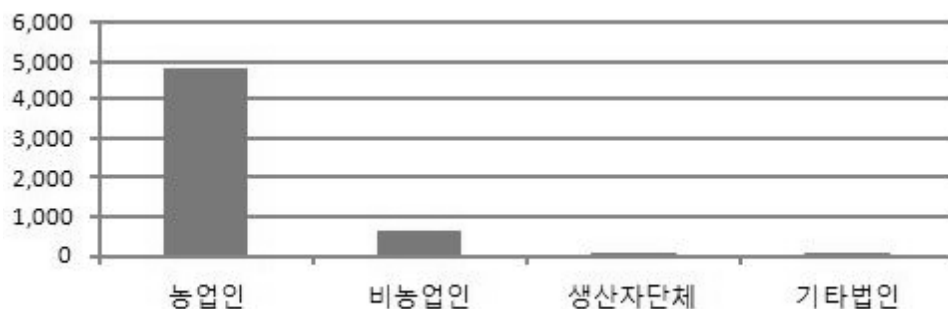
- 2012년 총 출자법인 646개¹¹⁾에 총출자수는 5,489명이며,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농업인 4,824명, 비농업인 595명, 생산자단체 14명, 기타법인 56명으로 집계됨

<표 III-4>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 비율(2012년 기준)

	출자법인 수 (개)	계 (명)	법인당 (명)	출자자 구성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생산자단체 (개)	기타법인 (개)
계	646	5,489	8.5	4,824	595	14	56
영농조합법인	483	4,600	9.5	4,221	365	4	10
농업회사법인	163	889	5.5	603	230	10	46

11) 전체 제주지역 농업법인수에서 출자자 개별운영 농업법인수를 제외한 숫자임

<그림 III-4>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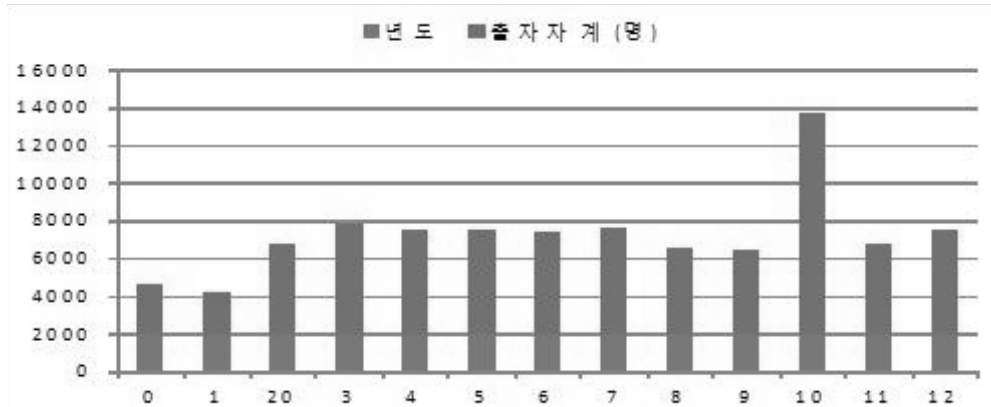


- 법인당 출자자수는 영농조합법인 9.5명, 농업회사법인이 5.5명으로 소수의 출자자들의 경우 법인설립시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최근 출자자 변화를 추이를 보면, 2012년 출자자는 2010년(11,681명)보다 무려 6,192명이 감소하였고, 2011년(4,797명)보다는 792명이 증가하였음(<표 III-5> 참조)

<표 III-5>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수 변화 추이

년도	출자 법인 수	출자자(명)				출자자 계 (명)
		농업인	비농업인	생산자단체	기타법인	
2000	101	2,559	54	47	-	2,660
2001	73	2,198	24	-	-	2,222
2002	90	2,462	2,354	-	-	4,816
2003	93	3,381	242	1	-	5,794
2004	115	3,083	2,409	3	-	5,495
2005	122	2,877	2,564	3	-	5,444
2006	139	2,840	2,550	4	-	5,394
2007	147	3,010	2,584	2	-	5,596
2008	169	2,161	2,402	4	-	4,567
2009	167	2,067	2,415	2	-	4,484
2010	407	8,753	2,920	8	-	11,681
2011	528	4,233	555	9	-	4,797
2012	646	4,824	595	14	56	5,489

<그림 Ⅲ-5> 출자자수 변화 추이



(2) 제주 농업법인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

- 출자자 ‘5~9인’의 법인이 가장 많은 411개로 63.6%를 점유하고, ‘4인 이하’ 140개(21.7%), ‘10~49인 이하’ 79개(12.2%), ‘50인 이상’ 16개(2.5%) 순이며, ‘9인 이하’의 법인수가 551개로 전체 농업법인의 85.3%임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출자자 ‘5~9인 이하’ 373개(60%)이고 ‘10~49인 이하’ 69개(26.7%)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 규모별 분포를 보면 ‘4인 이하’ 113개(58.3%)이고, ‘5~9인’ 38개(33.3%)로 나타남

<표 Ⅲ-6>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2012년 기준)

	계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출자법인수	646	140 (21.7%)	411 (63.6%)	79 (12.2%)	16 (2.5%)
영농조합법인	483	27	373	69	14
농업회사법인	163	113	38	10	2

(3) 제주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

- 2012년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를 보면 전체 646개 법인 중 ‘1억원~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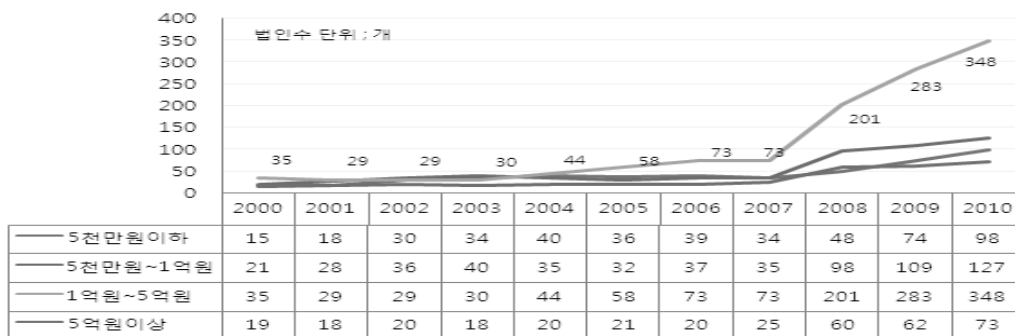
원' 이 348개(43.8%)로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127개(19.5%), '5천만원 이하' 98개(15.2%), '5억원 이상' 73개(11.3%) 순으로 나타남

<표 Ⅲ-7>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2012년 기준)

	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출자법인수	646	98 (15.4%)	127 (19.6%)	348 (53.8%)	73 (11.5%)
영농조합법인	483	63	92	278	50
농업회사법인	163	35	35	70	23

- 출자자 규모별 법인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2012년 출자금 규모별로 분석하면 '1억~5억원' 7.7배, '5억원 이상' 7.3배, '5천만원~1억원' 5.7배, '5천만원 이하' 4.1배 순으로 성장하였음

<그림 Ⅲ-6> 제주 농업법인 출자금 규모별 법인수 변화추이



2)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1)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 2012년 출자 농업법인 종사자는 5,166명에 달하며, 법인당 종사자수는 8.0명임. 이중 상시 종사자 3,191명으로 61.8%를 차지하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1,975명으로 38.2%를, 이외 외국인근로자도 127명으로 집계됨
- 전국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수는 6.8명임

〈표 III-8〉 출자법인 종사자 현황(2012년 기준)

계(명)	종사자수	법인당 종사자 (종사자/법인수)	종사자 구분		
			상시 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제주	5,166	8.0	3,191	1,975	127
전국 법인 (11,747)	79,737	6.8	60,364	19,373	3,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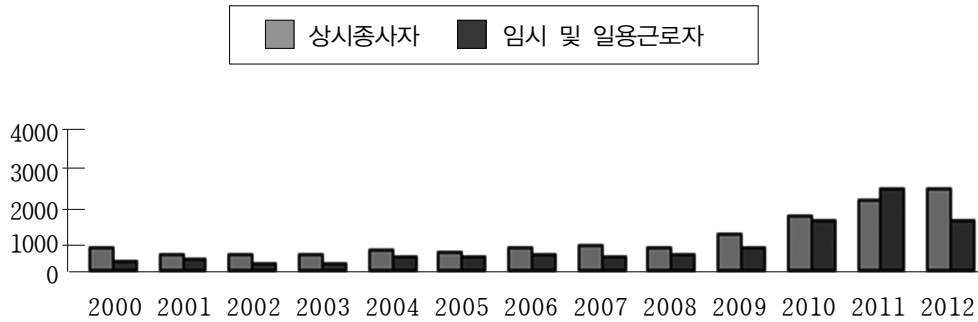
-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상시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포함한 전체 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 법인수가 증가하면서 법인당 종사자수는 2000년(1,277명) 기준으로 법인당 12.6명에서 2012년(5,166명) 8.0명으로 33.5% 감소하였고, 상시 종사자의 경우는 9.1명에서 4.9명으로 50.5% 감소하였음
 - 2000년~2012년간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구성 비율은 평균 39.2%임

〈표 III-9〉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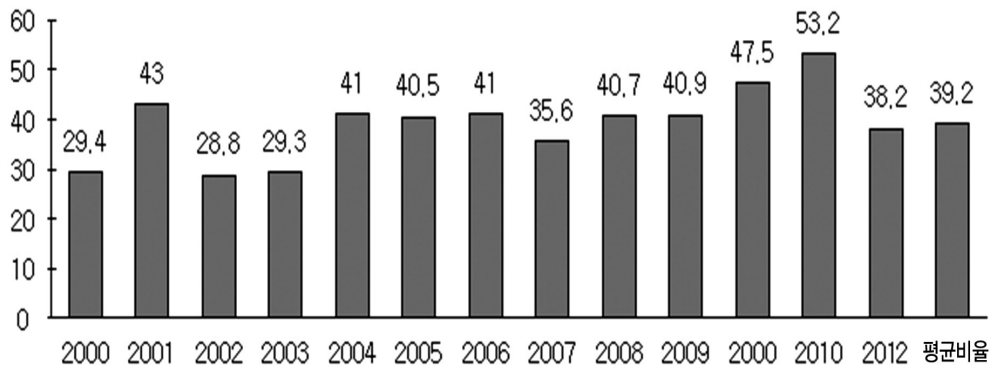
년도	출자 법인수	종사자 계	상시 종사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근로자/비율(%)
2000	101	1,277	902	375/(29.4)
2001	73	1,096	625	471/(43.0)
2002	90	928	661	267/(28.8)
2003	93	908	636	272/(29.3)
2004	115	1,315	776	539/(41.0)
2005	122	1,256	747	509/(40.5)
2006	139	1,524	899	625/(41.0)
2007	147	1,456	937	519/(35.6)
2008	169	1,451	861	590/(40.7)
2009	167	1,444	853	591/(40.9)
2010	407	4,059	2,142	1,917/(47.5)
2011	528	5,960	2,785	3,175/(53.2)
2012	646	5,166	3,191	1,975/(38.2)

*전체평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39.2

<그림 Ⅲ-7> 제주 농업법인 종사자 수 변화 추이



<그림 Ⅲ-8> 제주 농업인 종사자 수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구성 비율(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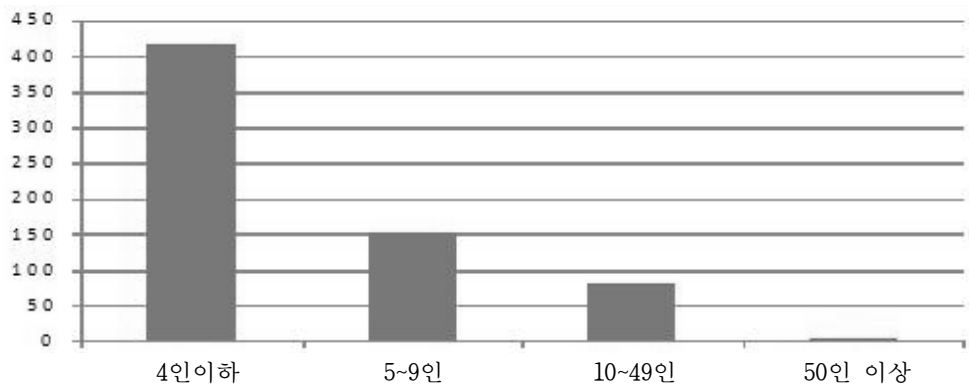


- 2012년 상시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4인 이하’ 416개로 64.4%, ‘5~9인’ 151개로 23.4%, ‘10~49인’ 78개로 12.1% 순이며, ‘50인 이상’의 법인은 1개뿐임

<표 III-10> 2012년 제주 농업법인 상시종사자 규모별 현황

구분	4人以下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계	416 (64.4%)	151 (23.4%)	78 (12.1%)	1 (0.1%)	646 (100%)
영농조합법인	308 (47.7%)	120 (18.6%)	55 (8.5%)	0 (0%)	483 (74.8%)
농업회사법인	108 (16.7%)	31 (4.8%)	23 (3.6%)	1 (0.1%)	163 (25.2%)

<그림 III-9> 2012년 종사자 규모별 법인수



3)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융자금 현황

- 제주지역 농업법인 가운데 법인설립 이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법인수는 279개,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수는 123개에 달하고 있음
-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은 조직형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231개, 농업회사법인이 48개로 각각 집계됨
 - 정부보조금의 경우 279개 법인이 모두 1,197억원을 지원받아 평균 법인당 4억2,94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음
- 정부융자금을 지원받은 조직형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 94개, 농업회사법인 29개로 집계됨
 - 정부융자금의 경우 123개 법인이 577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법인당 평균 4억6900원씩 융자지원되었음

<표 Ⅲ-11> 2012년도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원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수 ¹²⁾	(누계) 금액	(누계) 법인당	법인수 ¹³⁾	금액	법인당
계	279	119,792	429.4	123	57,796	469.9
영농 조합 법인	231	97,407	421.7	94	35,028	372.6
농업 회사 법인	48	22,385	466.4	29	22,768	785.1

- 전국적으로는 정부보조금의 경우 법인당 3억9,020만원, 정부융자금은 법인당 5억6,420만원씩 지원받았음

<표 Ⅲ-12> 2012년도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정부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원현황

구분	정부보조금(누계)	정부융자금
금액(백만원)	390.2	564.2

- 2012년도 당해연도 정부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187개 법인에 정부보조금 342억9,000만원, 법인당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음

<표 Ⅲ-13> 2012년도 정부보조금 지원 현황

	법인수	금액(백만원)	법인당(백만원)
계	187	34,290	183.4
영농조합법인	150	26,975	179.8
농업회사법인	37	7,315	197.7

12) 법인설립 후 정부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법인수

13) 2012년 12월말 현재 정부융자금 잔액이 있는 법인수

4) 경영경지 면적 현황

(1) 경영경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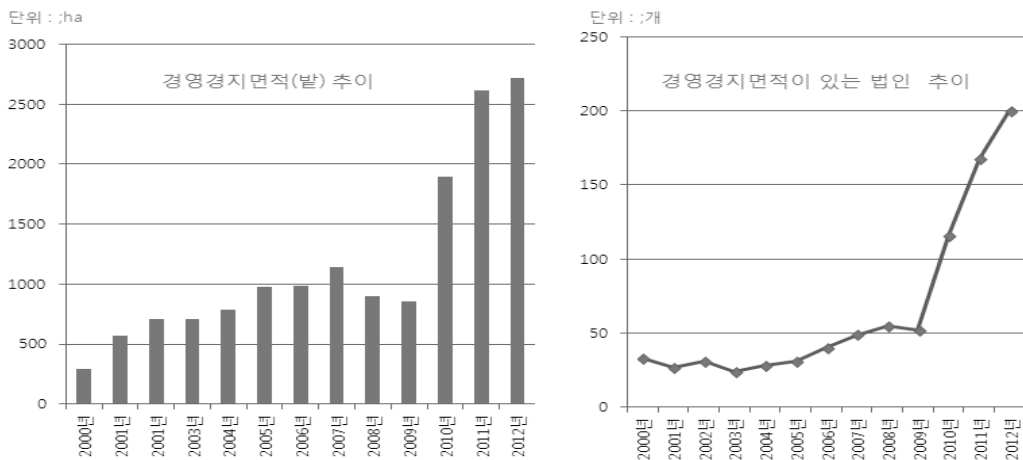
- 제주지역 농업법인 2012년도 경영경지 법인수는 200개에 달하며, 경영경지면적은 경지면적(밭+과수) 2,720ha, 과수 87ha, 목초지 923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농업법인 경영경지 면적 변화추이는 <표 III-14>와 같음

<표 III-14> 농업법인의 경영경지 면적 현황

구분	경영경지 법인수	경영경지면적(단위:ha)		
		경지면적 (밭+과수)	과수	목초지
2000년	33	292	1	0
2001년	27	572	13	15
2002년	31	708	126	566
2003년	24	707	38	615
2004년	28	785	35	603
2005년	31	977	59	485
2006년	40	986	101	231
2007년	49	1,145	41	160
2008년	55	895	27	492
2009년	52	856	16	577
2010년	116	1,892	67	826
2011년	168	2,617	124	270
2012년	200	2,720	87	923

<그림 III-10> 경영경지면적과 경영경지 면적 있는 법인현황 비교



(2) 유형별 재배면적

- 2012년 농업법인의 유형별 재배면적은 노지재배면적이 2,816ha로, 총재배면적의 99.1%로 제주도 경영경지면적은 거의 노지재배 경지를 하고 있음
- 2012년 농업법인의 전국 평균 시설재배면적(1,890ha) 3.9%에 비하여 제주 시설재배면적(25ha)은 0.9%로 매우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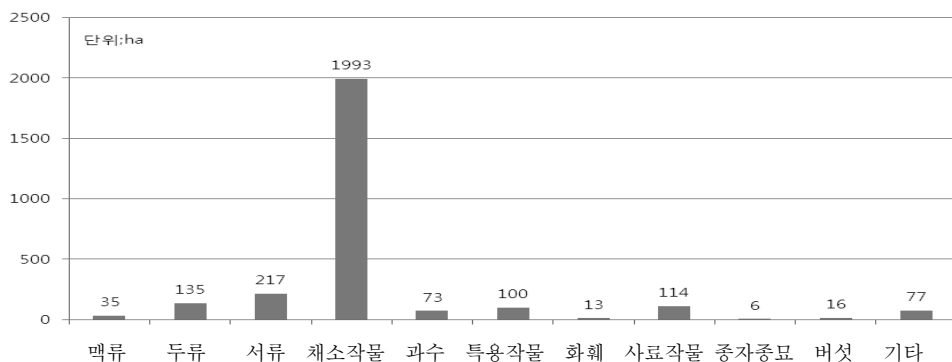
(3) 작물별 재배면적

- 2012년 제주 작물 총재배면적은 2,841ha에 달하며 통계상의 11개 작물별 중 채소작물 1,993ha, 서류 217ha, 두류 135ha 순임
- 채소작물은 전체 재배면적의 71.7%를 점유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작물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함
- 특용작물의 재배면적은 약용작물 재배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표 III -15> 2012년 제주 작물별 재배면적

	계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채소작물	과수	특용작물	화훼	사료작물	종자·종묘	버섯	기타
계	2,841	35	135	64	217	1,993	73	100	13	114	6	16	77
영농조합법인	2,410	2	58	23	179	1,875	43	81	9	96	3	15	27
농회사법인	431	33	77	41	38	118	30	19	4	18	3	1	49

<그림 III -11> 2012년 제주 작물별 재배면적



(4) 가축 사육두수와 판매두수 현황

- 2012년 기준 가축사육 및 판매 법인수는 76개(영농조합법인 64개, 농업회사법인 12개)에 달하고 있음
- 이들 법인이 가축 사육두수와 판매두수 현황은 <표 III-16>와 같음

<표 III-16> 2012년 제주 가축 사육두수와 판매두수

구분	사육 두수	판매 두수
한육우	1,932	477
젖소	630	-
돼지	71,548	106,354
닭	670,300	2,748,200
기타	826	230

(5) 농기계 보유 현황

- 2012년 기준 농업법인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농기계 보유 법인수는 전체 법인 693개의 44.8%인 311개에 달하고 있음
- 전국 농업법인의 농기계 보유는 전체인 12,981개의 45.3%인 5,887개에 달함

<표 III-17> 전국 및 제주의 농업법인 농기계 보유현황

	법인 수	계 (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예취기	관리기	분무기	온풍기	건조기	SS기	기타
제주	311	1,391	158	2	21	49	164	98	119	68	86	36	593
전국	5,887	44,920	5,887	1,344	1,112	2,149	5,281	2,091	4,346	6,053	3,915	657	12,085

5) 시설물 보유 현황

- 2012년 기준 농업법인의 시설물 보유현황을 보면, 시설물 보유 법인수는 전체 법인의 68.1%인 472개에 달하고 있음
- 전국 농업법인의 시설물 보유는 전체법인 12,981개의 61.4%인 7,981개에 달함

<표 III-18> 전국 및 제주의 농업법인 시설물 보유현황

	법인수	계	선과, 선별장	농기계 창고	건조장	가공 공장	축사	종균 배양장	사료 창고	저온 저장고	기타
제주	472	1,168	131	78	39	130	262	13	45	309	161
전국	7,981	25,950	1,934	2,633	949	2,851	5,609	369	1,404	7,049	3,152

6) 매출 및 자본,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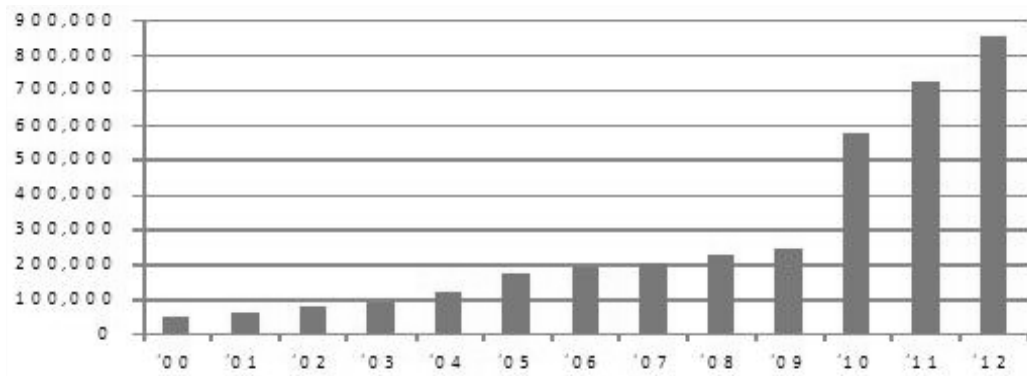
(1) 전체 매출규모 현황

- 2012년 기준 제주지역 농업법인 매출액은 총 8,529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전체 73.9%인 6,304억원에 달하고, 농업회사법인은 23.1%인 2,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농업법인의 매출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는 전년도 매출액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음

<표 III-19>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51,838	62,308	80,389	89,307	121,380	171,206	193,714	202,021	229,276	244,887	576,511	726,812	852,939
영농조합법인	49,999	60,709	79,743	88,847	118,755	161,610	175,991	198,886	226,302	238,689	478,966	590,820	630,395
농업회사법인	1,839	1,599	646	460	2,625	9,596	17,723	3,135	2,974	6,198	97,545	135,992	222,544

<그림 III-12>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2) 법인당 매출액 규모

- 2012년 기준 제주지역 법인당 평균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매출액을 결산법인수 598개로 나눈 결과, 법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14억 1,8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계산됨
 - 영농조합법인 법인당 14억500만원,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당 14억5,7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
 -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매출액은 제주지역보다 14% 많은 16억3,900만원으로 집계됨

<표 III -20>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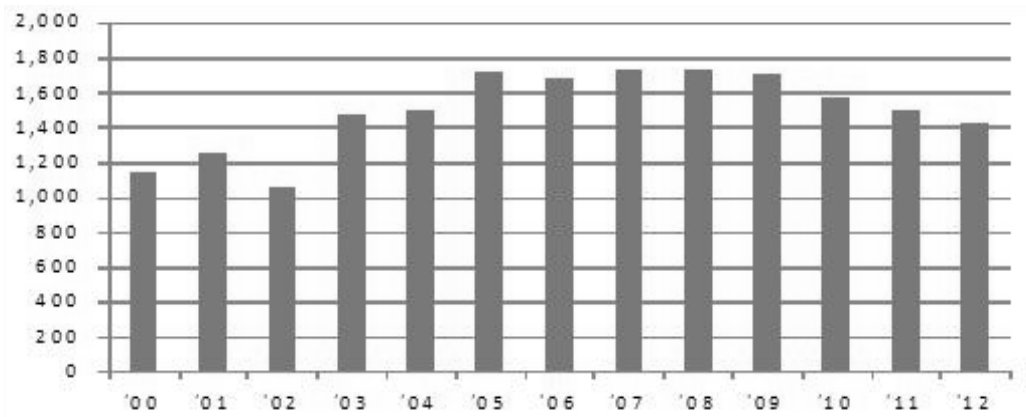
조직형태별	2012						
	결산법인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매출총이익 (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598	1,418	1,169	248	242	7	19
영농조합법인	447	1,405	1,162	243	230	14	26
농업회사법인	151	1,457	1,192	264	277	-13	-1

- 매출총이익은 법인당 2억 48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2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700만원, 당기순이익은 1900만원 등으로 집계됨
- 농업법인당 매출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III -21>, <그림 III -13>과 같음
 - 2009년까지는 법인당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억원에 달할 정도였으나 농업법인 설립이 급격한 증가를 보인 2010년이후에는 법인당 매출액이 14억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표 III-21>연도별 농업법인당 매출액 변화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금액 (백만원)	1,145	1,256	1,063	1,465	1,497	1,716	1,683	1,738	1,726	1,706	1,573	1,499	1,418
영농조합 법인	1,210	1,315	1,111	1,540	1,588	1,766	1,665	1,852	1,834	1,806	1,548	1,540	1,405
농업회사 법인	447	391	69	62	375	1,156	1,901	219	265	527	1,711	1,344	1,457

<그림 III-13> 연도별 농업법인 매출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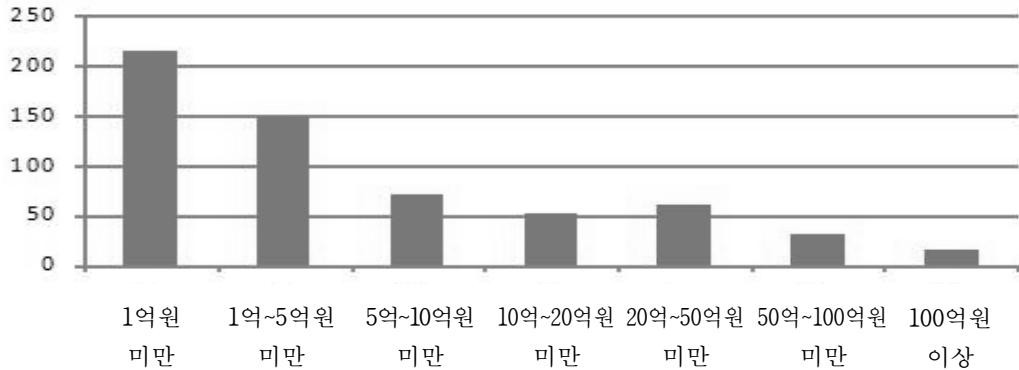
(3) 매출액 규모별 비율

- 제주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구성 비율을 보면 ‘1억원 미만’ 이 35.9%, ‘1억~5억원 미만’ 이 25.1%, ‘5억~ 10억원 미만’ 이 11.9%, ‘20억~50억원 미만’ 이 10.4% 순임

<표 III-22> 매출액 규모별 구성비율

매출액 규모별	법인수	구성비율
1억원미만	215	35.9
1억~5억원미만	150	25.1
5억~10억원미만	71	11.9
10억~20억원미만	53	8.9
20억~50억원미만	62	10.4
50억~100억원미만	31	5.2
100억원이상	16	2.6
계	582	97.4%

<그림 Ⅲ-14> 매출액 규모별 법인수



(4) 영업이익 규모 현황

- 2012년 기준 결산법인 598개 중 ‘영업이익 적자’ 271개, ‘1억원 미만’ 268개, ‘1~5억원 미만’ 50개, ‘5억원 이상’ 9개 등으로 나타남
-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적자 법인 비율이 높은 것(51.6% 대 43.1%)으로 나타남

<표 Ⅲ-23> 제주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분포(2012년 기준)

결산법인	적자	1억원미만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계	271 (45.3%)	268 (44.8%)	50 (8.3%)	9 (1.5%)
영농조합법인	193	211	38	5
농업회사법인	78	57	12	4

<표 Ⅲ-24> 전국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분포

결산법인	적자	1억원미만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352(전국)	4,483 (43.3%)	4,666 (45.0%)	1,015 (9.9%)	188 (1.8%)

※ 전국은 10,352개중 1억원 미만 4,666개, 적자 4,483개, 1~5억원미만 1,015, 5억원이상 188개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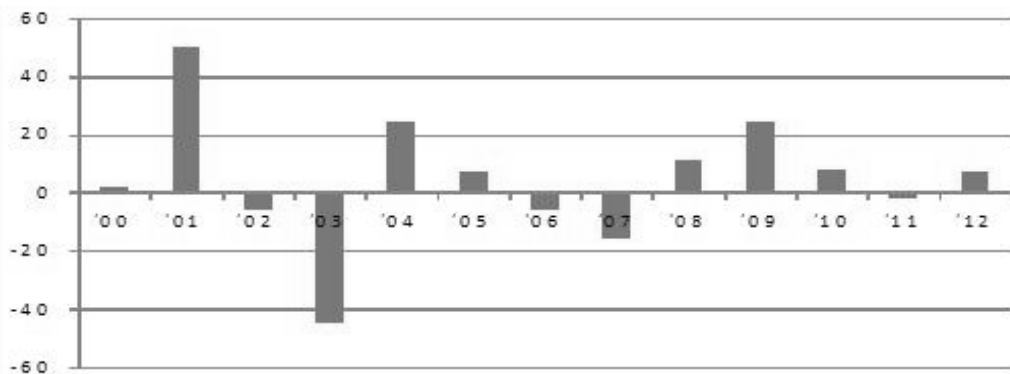
○ 연도별 법인당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법인당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법인당 영업이익 최대 흑자는 2001년 5,700만원, 최대 적자는 2003년 -4,500만원으로 집계됨

<표 III -25> 연도별 법인당 영업이익 변화 추이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금액 (백만원)	2	50	-6	-45	24	7	-6	-16	11	24	8	-2	7
영농조합 법인	4	57	-4	-43	30	11	3	0	19	32	15	7	14
농업회사 법인	-26	-54	-50	-80	-47	-40	-106	226	-94	-63	-27	-33	-13

<그림 III -15> 연도별 법인당 영업이익 변화 추이



(5) 자본 규모 현황

○ 2012년 기준 제주 농업법인당 자산은 12억원, 부채는 8억원, 자본은 4억원 정도임

-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됨(<표 III -24> 참조)

○ 2012년 기준 자산규모별 법인수를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인 216개로 가장 많고, 10억이상인 174개, 1억미만과 5~10억원미만이 각각 104개로 나타남

<표 III-26> 제주 농업법인 자산실태

	1억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이상
계	104	216	104	174
영농조합법인	70	167	82	128
농업회사법인	34	49	2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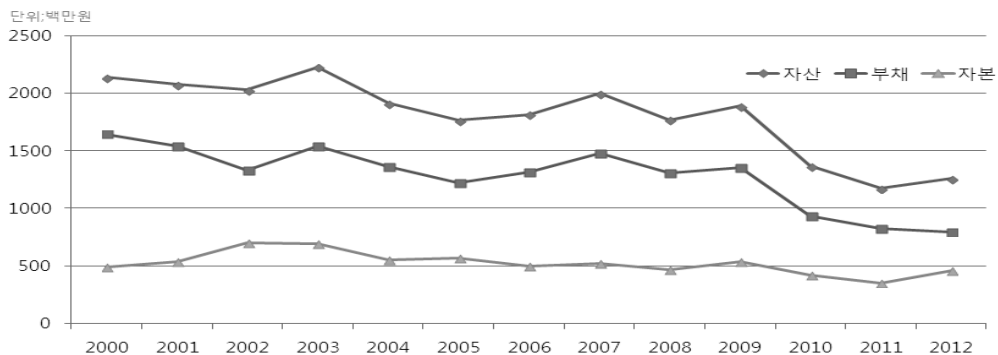
○ 2000년부터는 자산 부채 자본의 추이를 살펴보면,

- 자본규모는 2000년 기준하여 2012년까지 년도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2000년 기준하여 5억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부채비율은 2000년 343%에서 2012년 172%로 통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III-27> 농업법인 경영실태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자본)
2000	2137	1645	492	343%
2001	2076	1539	538	286%
2002	2028	1331	697	191%
2003	2227	1537	690	223%
2004	1913	1360	553	134%
2005	1766	1221	565	216%
2006	1815	1317	499	264%
2007	2001	1479	521	284%
2008	1768	1304	465	280%
2009	1892	1354	538	252%
2010	1366	934	419	223%
2011	1173	822	351	234%
2012	1256	795	461	172%

<그림 III-16> 농업법인 경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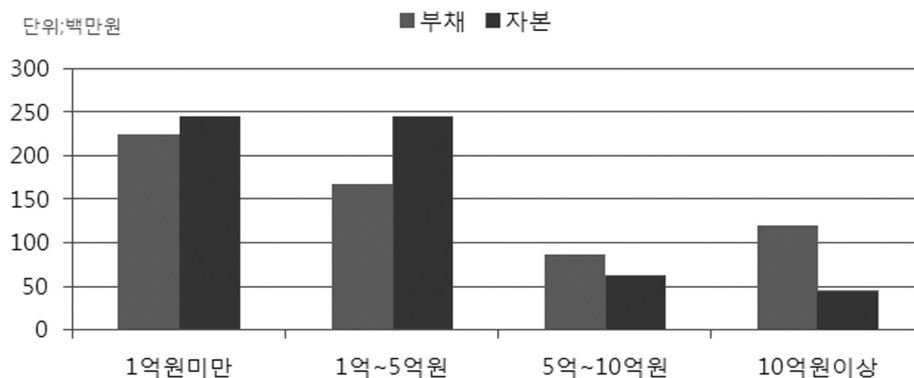
(6) 자본 부채 규모별 법인 수

- 2012년 제주 농업법인의 자본 규모가 1억원미만과 1억~5억원 미만이 각각 245개로 5억원미만의 자본금 가진 법인수가 490개로 전체 법인(598개)의 82.0%임
- 5억원 미만의 부채 규모는 영농조합법인(66.0%)과 농업회사법인(64.5%)로 부채규모 차이가 미미하나 5억~10억 미만은 영농조합법인(15.9%), 10억원 이상은 농업회사법인(25.1%)이 각각 높은 비율로 나타남
- 부채 규모는 1억원미만이 225개로 가장 많고, 1억~5억원 미만이 168개, 10억원 이상이 119개, 5억~10억원 미만 86개등으로 집계됐음
- 5억원 미만(393개)과 5억원 규모 이상(205개) 구성 비율은 65.6% 대 34.4% 임

<표 Ⅲ-28> 부채 규모별 법인수

	1억미만	1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이상
자본	245	245	62	46
영농조합법인	172	195	47	33
농업회사법인	73	50	15	13
부채	225	168	86	119
영농조합법인	170	125	71	81
농업회사법인	55	43	15	38

<그림 Ⅲ-17> 자본 부채 규모별 법인 수



(7) 재무제표 작성 현황

<표 III-29> 재무제표 작성 법인수

조직형태별	2012			
	법인수 ¹⁴⁾	재무제표 작성	간이기장	재무제표 미작성
계	646	598	-	48
영농조합법인	483	447	-	36
농업회사법인	163	151	-	12

○ 2012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인수는 598개로 92.5%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나머지 48개 법인(7.5%)은 간이기장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6) 세부 사업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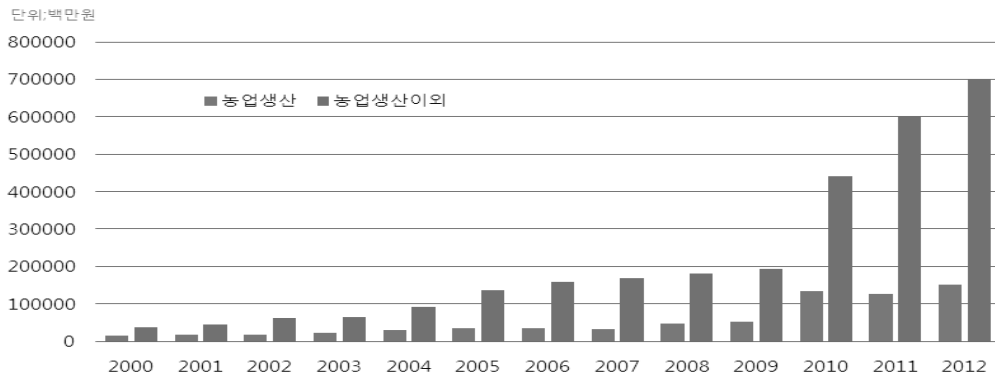
(1) 농업생산 및 농업생산 이외 사업 수익

<표 III-30> 2012년 제주 농업법인 매출액 사업별 금액(단위 백만원)

	법인수 (개)	계	농업생산수입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계	작물 재배	축산	계	가공 판매	유통 판매	농업 서비스	위탁 영농	기타
계	646	852,939	151,009	76,529	74,480	701,930	127,778	524,321	18,047	639	31,784
영농 조합 법인	483	630,395	115,300	59,250	56,050	515,095	76,962	401,396	17,161	606	19,576
농업 회사 법인	163	222,544	35,709	17,279	18,430	186,835	50,816	122,925	886	-	-

14)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을 제외한 제주지역 농업법인수

<그림 III-18> 제주농업법인의 매출 변화 추이



○ 2012년 전체 매출액을 농업생산 수입과 농업생산외 수입으로 구분하면, 농업생산 수입은 전체 17.7%인 1,510억원에 달하고, 농업생산이외 수익은 82.3%인 7,019억원에 달하여 농업생산이외 수입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이후 농업생산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업생산이 2009년 520억7,100만원, 2010년 1,347억3,400만원, 2011년 1,258억원, 2012년 1,510억900만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이 263%에 달함

- 농업생산 이외 사업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농업생산이 2009년 1,928억1,600만원, 2010년 4,417억7,700만원, 2011년 6,010억1,200만원, 2012년 7,019억3,000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이 303%에 달함

- 2010년 이후 3년 평균 농업생산 이외 사업수입 매출 증가율(303%)은 농업생산 매출 증가율(263%)보다 40%가 더 증가하였음

(2) 농업생산 외 사업 업종별 수입

○ 2012년 농업생산 외 사업 업종별 수입을 보면, 유통판매금이 5,243억2,100만원, 가공판매 1,217억7,800만원, 농업서비스 180억4,700만원, 기타 317억8,400만원, 위탁영농 6억3,900만원 등으로 나타남

<표 III-31> 농업생산 외 사업매출 추이 및 성장률 비교(단위 백만원)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위탁영농	기타
2000	12,460	21,913	254	-	2,271
2001	15,389	13,241	14,552	438	2,363
2002	23,607	9,164	26,232	150	2,828
2003	21,490	1,525	38,529	128	4,123
2004	21,208	12,782	48,468	115	9,268
2005	30,828	38,472	54,278	-	12,760
2006	32,663	29,001	83,404	-	13,820
2007	29,070	23,395	98,098	60	18,459
2008	27,207	49,294	75,158	92	29,313
2009	28,606	100,539	45,089	0	18,582
2010	91,410	236,245	17,822	0	96,300
2011	104,129	430,660	22,119	31	44,104
2012	121,778	524,321	18,047	639	31,784

- 2009년 기준으로 가공업 매출과 유통판매 매출이 2010년 이후 연속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공업은 2009년 기준으로 2010년 357%, 2011년 368%, 2012년 426%로 증가하였고 유통판매금은 2010년 235%, 2011년 428%, 2012년 522% 증가하여 같은 기간 내 유통판매금 증가율이 가공업증가율보다 년평균 11% 증가하였음
- 농업서비스는 2007년 980억9,800만원 최고의 매출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80억4,700원으로 최하의 매출순위를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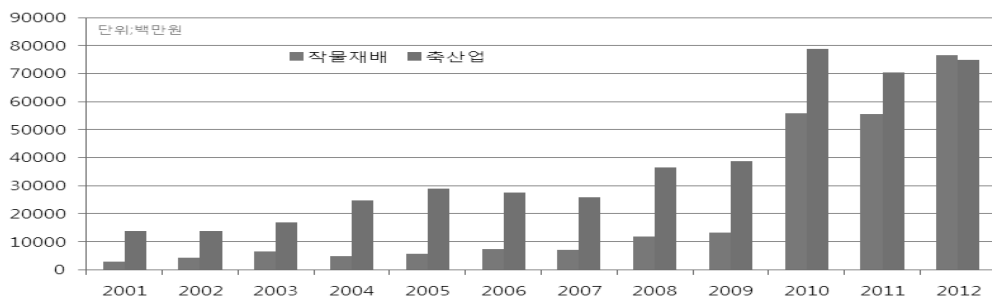
(3)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매출 추이

- 2009년 이전까지는 축산업 매출이 작물재배업 매출보다 평균 3.5배가 높았으나 2010년부터 작물재배업의 큰 폭의 상승으로 2012년에는 2001년 이래 처음으로 작물재배업 매출금(765억2,900만원)이 축산업 매출금(703억1,000만원)을 2.7%를 초과하였음

<표 III-32> 농업생산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매출 추이와 성장률 비교

구분	작물재배업	축산업
2000년	-	-
2001년	2,913	13,850
2002년	4,306	13,802
2003년	6,658	16,982
2004년	4,964	24,690
2005년	5,822	29,046
2006년	7,320	27,506
2007년	7,184	25,815
2008년	11,753	36,551
2009년	13,298	38,773
2010년	55,796	78,938
2011년	55,490	70,310
2012년	76,529	74,480

<그림 III-19>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의 수입(매출) 변화 추이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및 인식 조사

1. 개요

- 제주지역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한 경영자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팩스나 이메일 설문 조사 및 직접 법인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 : 2014. 4. 16 ~ 2014. 5. 20

-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제주지역 6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연구의 시간적, 비용적 제약에 따라 무작위로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우선적으로 설문조사 실시
 - 당초 70여개 분석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100개 정도의 농업법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종 33부를 확보하여 분석하게 됨
 -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법인운영이 활발하지 않아 법인운영자가 부재중인 법인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화상으로 접촉이 안 되거나 설문지 응답에도 소극적인 법인이 있었음
- 설문응답 농업법인은 <표 III-33>과 같으며, 법인 연혁은 평균 8년차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33> 설문응답 농업법인

(주)제주팜플러스, (주)오제주, (주)한라양계, (주)타마, 제주 보파리 팜, 아침미소, (주)일해, (주)어반파머스, (주)제주홍암가, 막신, (주)비케이수, 느영나영, (주)제주커피, 청솔아빠손식품, 어머니영농조합법인, 제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 e제주영농조합법인, 진생,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다울 친환경영농조합법인, e제주영농조합법인, 주희영농조합법인, 한울영농조합, 도구리영농조합법인, 현대바이오영농조합법인, 네추럴영농조합법인,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참맑은영농조합법인, 성읍녹차마을, 마루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제주환경, 영농조합편백우드

- 설문 내용은 <표 III-34>와 같음

<표 III-34> 설문지 질문 내용

구분	내용
사업운영	설립년도, 법인유형, 설립목적, 사업내용, 중요사업, 생산품목, 판매방법 판매지역, 출자금증액방식, 출자자참여방식
법인 필요성과 성과	법인 필요성, 유리한 점, 만족도, 어려운 점, 경영성과, 성과진전, 애로사항
지원정책	정책만족도, 문제점 개선방향, 지역농협가입여부, 지역농협과의 관계, 농협사업평가, 법인형태선택요인, 개선사항, 건의사항
6차산업화	6차산업화 참여의향, 조직여부, 특화단지참여의향

2. 분석 결과

1) 농업법인의 현황

(1) 설립 목적

- 농업법인의 설립목적은 묻는 질문에 ‘농산물 가공판매’ 응답이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영규모 확대’ 21.2%, 기타가 9.1% 순으로 나타남
-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체 역시 ‘농산물 가공판매’ 부문에서 각각 58.3%, 7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영규모 확대’가 20.8%, 22.2%순으로 나타남

<표 Ⅲ-35> 농업법인의 설립목적

구분	경영규모 확대	노동력 부족해소	농산물 가공 판매	시설 및 농기계 공동이용	기타	합계
영농조합 법인	20.8%	4.2%	58.3%	4.2%	12.5%	100%
농업회사 법인	22.2%	0%	77.8%	0%	0%	100%
전체	21.2%	3.0%	63.6%	3.0%	9.1%	100%

(2) 사업 유형

- 농업법인의 사업유형은 농축산가공이 3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농축산생산 30.4%, 농축산유통 27.3%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Ⅲ-36> 농업법인의 사업 유형

구분	농축산 생산	농축산 가공	농축산 유통	영농대행	시설 및 농기계임대	기타	합계
영농조합 법인	30.0%	28.0%	30.0%	2.0%	2.0%	8.0%	100
농업회사 법인	31.3%	43.8%	18.8%	6.3%	0.0%	0.0%	100
전체	30.3%	31.8%	27.3%	3.0%	1.5%	6.1%	100

(3) 매출액 현황

- 농업법인의 사업별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농축산가공이 48.5%, 농축산생산 27.3%, 농축산유통이 15.2% 등 순으로 나타남

<표 III-37> 농업법인의 사업별 매출액 현황

구분	농축산 생산	농축산 가공	농축산 유통	영농대행	시설 및 농기계임대	기타	합계
전체(%)	27.3	48.5	15.2	3.0	3.9	6.1	100

(4) 주요 생산 품목

- 농업법인의 중요 생산 품목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채소 33.3%, 과수 18.2%, 특작과 축산이 각각 12.1%씩 순으로 나타남

<표 III-38> 농업법인의 주요 생산 품목

구분	쌀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복합	기타	합계
전체(%)	3.0	33.3	18.2	12.1	12.1	3.0	18.2	100

(5) 생산품 판매방법

- 농업법인 생산품 판매방법은 위탁판매 30.9%로 가장 많았고, 직판장 29.1%, 도매시장 18.2%, 공판장 9.1% 등 순으로 나타남

<표 III-39> 농업법인의 생산품 판매방법

구분	직판장	공판장	계통출하	위탁판매	도매시장	합계
전체(%)	29.1	9.1	12.7	30.9	18.2	100

(6) 생산품 판매지역

- 생산품 판매지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국이 4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주지역 25.5%, 수출 17.6%, 수도권 9.8%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Ⅲ-40〉 농업법인의 생산품 판매지역

구분	제주지역	전국	수도권	수출	합계
전체(%)	25.5	47.1	9.8	17.6	100

(7) 출자금 증액방법

- 출자금 증액방법으로는 개별출자 증액이 54.5%로 가장 많았고, 출자자 확대 18.2%, 이익증여금 9.1%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Ⅲ-41〉 농업법인의 출자금 증액방법

구분	이익증여금 적립	출자자 확대	개별출자 증액	기타	합계
전체(%)	9.1	18.2	54.5	9.1	100

(8) 출자자(조합원) 참여방식

- 법인 참여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개별영농과 농업법인 경영에 모두 참여’가 39.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개별영농은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가 21.4%, ‘법인대표자 단독, 그 외 출자자는 종업원으로 참여’가 14.3%, ‘개별 영농위주로 법인대표자 구분없이 농업법인이 명목상 존재’ 10.7%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Ⅲ-42〉 농업법인의 참여방식

구분	전체(%)
개별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출자자 공동경영)	21.4
개별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 종사하는데 법인대표자는 단독으로 하고, 그 외 출자자는 종업원으로 참여	14.3
개별영농과 농업법인 경영에 모두 참여	39.3
개별 영농위주로 법인대표자 구분없이 농업법인은 명목상 존재	10.7
농업법인 대표자가 단독으로 경영하고, 나머지는 명목상 조합원인 상태	7.1
기타	7.1
합계	100

2) 농업법인의 필요성 및 성과

(1) 농업법인의 필요성

-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법인의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불필요, 5점; 매우 필요)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 4.28점(필요하다가 전체 84.4%)으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III -43> 농업법인의 필요성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합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	3.1	12.5	37.5	46.9	100.0	4.28/.813

(2) 농업법인의 장점

- 농업법인이 농가에 비해 유리한 점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정책지원이 21.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매 부문이 16.1%, 규모 확대가 15.3%, 가공이 13.6%, 기술개발이 12.7% 순으로 나타남

<표 III -44> 농업법인의 장점

구 분	전체(%)
규모확대	15.3
기술개발	12.7
가공	13.6
판매	16.1
정책지원	21.2
경영효율	10.2
노동력부족해소	5.1
부대사업경영	5.9
합계	100

(3) 설립목적에 대한 만족도

- 농업법인 설립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향상 측면’이 평균 3.72점, ‘인력확보 측면’이 3.29점, ‘자금조달 측면’이 3.19점, 종합적으로 3.38점으로 나타나 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남

<표 Ⅲ-45> 농업법인 설립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소득향상 측면(%)	-	3.1	37.5	43.8	15.6	100	3.72/.772
인력확보 측면(%)	-	16.1	45.2	32.3	6.5	100	3.29/.824
자금조달 측면(%)	6.3	15.6	37.5	34.4	6.3	100	3.19/.998
종합(%)	-	13.8	41.4	37.9	6.9	100	3.38/.820

(4) 운영상 애로사항

- 농업법인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역할분담과 책임범위가 44.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합원의사 반영 25.9%, 신속한 방침 결정 11.1%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Ⅲ-46> 운영상 애로사항

구분	법인유형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역할분담과 책임범위	42.9	50.0	44.4
신속한 방침 결정	14.3	-	11.1
명령계통 철저	-	16.7	3.7
조합원 의사 반영	28.6	16.7	25.9
기타	14.3	16.7	14.8
합계	100	100	100

(5) 경영성과 만족도

- 농업법인 경영성과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1점; 비관적, 5점; 매우 희망적)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의 성과는 평균 3.56점, 향후 전망은 3.81점으로 3점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표 Ⅲ-47〉 농업법인 경영성과 만족도

구분	비관적	불투명	현상 유지	희망적	매우 희망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현재의 성과(%)	-	3.1	46.9	40.6	9.4	100	3.56/.716
향후 전망(%)	-	3.1	37.5	34.4	25.0	100	3.81/.859

(6) 경영성과의 진전여부

- 경영성과 분야별 향후 진전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규모 확대가 36.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판로개선이 33.3%, 기술개발이 20.0% 등순으로 나타남.

〈표 Ⅲ-48〉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진전여부

구분	전체(%)
규모 확대	36.7
기술 개발	20.0
판로 개선	33.3
자금 확보	3.3
사업의 복합화	3.3
기타	3.3
합계	100

7) 경영상 애로사항

- 농업법인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금부족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25.9%, 경영 및 관리능력부족 11.1% 등 순으로 나타남

<표 III -49> 경영상 애로사항

구분	농업유형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금 부족	42.9	50.0	44.4
경영 및 관리능력 부족	14.3	-	11.1
조합원간의 의견 불일치	-	16.7	3.7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28.6	16.7	25.9
기타	14.3	16.7	14.8
합계	100	100	100

3)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1) 농업법인 지원정책사업의 평가

- 농업법인 지원정책사업의 평가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3.32점, 지원조건에 3.29점, 사후관리 및 평가에 3.10점 등 순으로 나타남

<표 III -50> 농업법인 지원정책사업의 평가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지원조건(%)	-	6.5	58.1	35.5	-	100	3.29/.588
대상자 선정과정(%)	-	9.7	48.4	41.9	-	100	3.32/.653
사후관리 및 평가(%)	6.5	9.7	54.8	25.8	3.2	100	3.10/.870

(2)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여부

- 농업법인의 농협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가입하지 않았다가 37.9%, 잘 모르겠다 13.4% 등 순으로 나타남

〈표 III-51〉 농업법인의 농협 가입 여부

구분	전체(%)
가입하지 않았다	37.9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44.8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4
잘모르겠다	13.8
기타	-
합계	100

(3) 지역농협과의 협력 가능성

- 지역농협과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상호 협조관계’ 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협력관계를 원하나 지역농협에서 배타적’ 이라는 응답이 30.0%로 나타났고, ‘특별한 관계가 없음’ 은 20.0%로 나타남

〈표 III-52〉 지역농협과의 협력 가능성

구분	전체(%)
상호 협조관계	43.3
협력관계를 원하나 지역농협에서 배타적	30.0
상호 경쟁관계	6.7
협력을 원하지 않음(지역농협에서 호의적일지라도)	-
특별한 관계가 없음	20.0
합계	100

(4) 농협사업 이용시 만족도

- 농업법인이 농협사업 이용시 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5점; 매우 만족)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구매사업은 3.12점, 판매사업 3.12점, 공동사업 2.83점, 사업자금은 2.75점으로 나타남

4) 6차산업화에 대한 의견

(1) 6차산업화 의향

- 농업법인의 향후 6차산업화 의향을 질문한 결과, ‘매우 의향이 있다’ 가 4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향이 있는 편’ 이 16.7%, 보통 33.3%, ‘의향이 없다’ 는 3.3%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I-53> 농협사업 이용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평균 /표준 편차
구매사업(%)	-	16.0	60.0	20.0	4.0	100	3.12/.726
판매사업(%)	-	16.0	56.0	28.0	-	100	3.12/.666
공동사업(%)	-	30.4	56.5	13.0	-	100	2.83/.650
사업자금(%)	8.3	20.8	54.2	16.7	-	100	2.79/.833

<표 III-54> 6차산업화 특화단지 참여 의향

구분	전혀 의향 없음	의향 없음	보통	의향이 있는 편임	매우 의향 있음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3.3	33.3	16.7	46.7	100	4.07/.980

(2) 6차산업화 조직 여부

- 농업법인의 6차산업화를 추진할 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가 71.4%, ‘없다’가 28.6%로 나타남

<표 III-55> 농업법인의 6차 산업화 조직 여부

구 분	전체(%)
있 다	71.4
없 다	28.6
합 계	100

5) 기타 농업법인과 관련 제도 및 정책상 개선 내지 건의사항

- 신규 법인 등록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
 - “당초 취지대로 가족농을 기업적 농업경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지금에는 도시 일반인들이 설립하는 농업법인이 난립되어 농업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

- “특히 유기농재배 등 노력을 많이 한 농업법인에 대한 우대 정책 필요하다”

○ 농업법인과 지원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

- “자금조달이 필요한지만 어디서 지원되는지 모르겠다”

- “농산물 구매자금 확대, 기술개발 자금지원,홍보마케팅 온라인구축, 오프라인 공동매장 설립 필요하다”

○ 친환경 농업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증액 및 지속화

- 1회성 지원이 아닌 조직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원 지속 확대

○ 6차산업화 개론적 접근이 아닌 융복합단지 구축 기획 필요

- 발효식품특화단지 등

○ 틀에 박힌 지원정책에서 맞춤형 지원정책 시행

- 농어촌공사 토지공사 농업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구사 필요(임대농지)

○ 제도와 정책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지원 후 본인 사용유무 확인 및 사후 관리 필요

제3절 현황 분석 및 인식 조사 결과 요약

○ 이상과 같이 본 장의 제1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현황,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은 76%(527개) 대 24%(166)개이지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운영내용 큰 차이가 없음

- 제도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두 법인의 사업범위, 재배작물, 상시종사자수, 정부보조금 사업 유형, 출자규모 등 실질적인 운영상의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출자자 규모에서 농업회사법인 4인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찾아 신규 법인 설립시 소수의 출자자들이 선호하는 법인형태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음

1. 농업경영의 기업화 전문화 도모

- 농업법인 도입이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것도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농업생산구조의 기업화, 전문화를 도모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부실, 적자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이후 농업의 기계화, 생산비용의 절감, 협업적 기업적 경영 마인드 인식전환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음은 부인하지 못함
- 설문조사 대상 법인의 설립목적은 농산물 가공판매> 경영규모 확대> 기타 순으로 답하였음
-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순이며, 필요성을 답한 응답자가 84.4%로 높게 나타났음
- 농업법인이 농가에 비해 유리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판매부분> 규모확대> 가공> 기술개발 등 순으로 답하였음
- 농업법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소득향상> 인력확보> 자금조달 측면 등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운영측면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역할분담과 책임범위> 조합원의사반영> 신속한 방침결정 등 순으로 답하였음
- 농업법인 경영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가 46.6%이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설립 후 진전을 보인 분야는 판로개선> 기술개발> 자금확보> 사업의 복합화 등 순으로 답하였음

2. 2010년부터 급격한 증가

- 1990년, 1994년, 1995년, 1996년에 각각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농업법인의 설립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농업인 외의 일반인 자본 출자가 가능해지면서 2010년 이후 농업법인 설립이 본격화됨
 - 농어업법인의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5년간 농어업법인의 신규설립이 급증하고 있음

3. 개별운영 법인 6.7%

- 출자자 운영형태는 출자자공동운영이 48.3%(335개), 대표자단독 44.8%(311개), 개별운영법인 6.7%(47개)임
- 도입초기에는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출자자 개별운영 형태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제주지역에는 출자자 개별운영 농업법인은 2012년말 54개로 전체 693개 중 6.7%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 -56>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 현황

	전체 농업법인수	출자자개별운영 법인수	비율
전국	12,981	1,234	9.5%
제주	693	54	6.7%

3. 법인당 출자금은 1~5억원, 출자자는 5~9인

- 제주지역 693개 농업법인에 참여한 출자자 가운데, 농업인 4,824명, 생산자단체 14명, 기타법인 56명, 그리고 비농업인은 전체의 10.8%인 595명으로 집계됨
 - 설문조사 대상 법인의 출자 참여방식은 개별영농과 농업법인 모두 참여> 농업법인에만 종사> 법인대표자 단독> 법인명목상 존재 등 순으로 답하였음
- 제주지역 법인당 출자금은 법인 1~5억원 미만이 전체의 5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19.6%를 차지
 - 출자자 규모별로는 5~9인이 411개로 63.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인 이하 21.6%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당 평균 출자자수는 8.5명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대상 법인의 출자금 증자방식은 개별출자> 출자자 확대> 이익증여금 등 순으로 답하였음

4. 종사자는 4인 이하가 가장 많음

- 상시종사자 규모별로는 4인 이하가 6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5~9인 이하 23.4%를 차지하고 있음
 - 법인당 종사자수는 제주지역의 경우 8.0명이고, 전국은 6.8명으로 나타남

5. 정부보조금 법인당 3~4억원

-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정부보조금의 경우 279개 법인이 모두 1,197억원을 지원받아 평균 법인당 4억 2,940만원씩을 지원받았음
 - 정부융자금은 123개 법인이 577억 9,600만원을 지원받아 법인당 평균 4억 6,900만원씩 융자지원되었음
 - 제주지역 농업법인 법인당 정부보조금은 전국평균(3억9,020만원)보다 3천만원 정도 더 받았고, 융자금은 전국평균(5억6,420만원)보다 1억원 정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33곳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경영 및 관리능력 부족 등 순으로 답하였음
 -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자금부족이 44.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25.9%, 경영 및 관리능력부족 11.1% 등 순으로 나타남
- 농업법인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 가장 많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다만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없었음

6. 매출규모 영세, 영업이익 적자 법인 많아

- 제주지역 농업법인의 매출규모는 연간 8,529억원(2012년기준)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법인당 매출액은 전국 16억 3900만원보다 2억원 남짓 적은 14억 1,800원으로 나타남
- 10개 법인 중 3~4개가 1억원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전국 농업법인 매출액 규모별 법인수를 보면 1억원 미만이 39%인 4,051개로 나타남
 - 제주지역 농업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은 215개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고 있음
- 10개 법인 중 4개 남짓 법인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영업이익 적자 농업법인수를 보면 전국 전체 농업법인에서는 전체의 43.3%인 4,483개가,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45.3%인 271개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 1억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낸 농업법인수(적자 법인 포함)는 전국에서는 전체의 88.3%인 9,149개, 제주에서는 90.1%인 539개로 집계됨
- 다만 자본, 부채 비율 안정적
 - 자본규모는 2000년 기준하여 2012년까지 년도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당 평균 5억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유지
 - 부채비율은 2000년 343%에서 2012년 172%로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7. 농업외 생산 큰 폭 증가

- 농업법인의 수입을 농업생산과 그 외로 구분해보면 2012년 현재 농업생산 수입이 전체의 17.7%이고 농업생산이외 수입이 82.3%를 기록하고 있음. 실제 사업유형은 농축산가공이 31.8%, 농축산 생산이 30.4%, 농축산 유통 27.3% 등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비중을 보면, 농축산가공이 48.5%, 농축산 생산이 27.3%, 농축산 유통 15.2%로 나타남
 - 농업생산 수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작물재배가 765억원, 축산 744억원 등으로 집계됨
 -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을 세부적으로 보면, 유통판매가 5,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공판매 1,277억원, 농업서비스 180억원, 농업서비스 위탁경영 6억원, 기타 317억원 등으로 집계됨
- 이러한 사업유형 패턴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한 추세임
 - 일본의 경우 농업생산이외 판매, 가공, 관광을 연계하는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는 평균 2억 7,054만엔에 달하고 있음
- 농업법인 이외 수입 중에서는 농업서비스는 갈수록 감소하고 가공업, 유통판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8. 채소작물 재배 70%이상 차지

- 작물생산은 노지재배가 99.1%를 차지하여 시설재배면적의 경우 전국 비율 3.9%에 비해 0.9%에 그쳐 제주지역 시설재배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작물재배면적으로 보면, 채소재배가 71.7%에 달하여 대표적인 작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서는 채소 33.3%, 과수 18.2%, 특작과 축산 12.1% 순으로 답하였음

9. 6차산업화 의향 높아

- 제주지역 농업법인들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6차산업화 참여 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차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컨설팅 등 정보교류의 활성화 필요

10. 농협 공동사업과 사업자금 불만족

- 지역농협 조합원 참여여부에 대해 조합원 가입> 가입하지 않음> 잘모름 순으로 답하였고, 지역농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협조관계> 지역농협의 배타적> 특별한 관계 아님 순으로 답하였음
- 지역농협 사업에 대한 만족도 응답은 보통이 가장 많고,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은 만족한 편이지만, 공동사업과 사업자금은 불만족한 편으로 나타남

IV.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제1절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1. 농업법인 활성화 필요성 및 정책 방향

- 농업의 경쟁력 확보는 농업경영의 확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¹⁵⁾
- 앞으로 한국농업은 보호 및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 자본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원리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중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유사한 농업환경을 가진 네덜란드는 일련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제2, 3위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
- 농업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주체인 인적자원개발과 매력적인 상품개발이 중요하며, 또한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지식과 자본을 갖춘 농업경영체 양성이 시급
 - 최근 농업도 경영이라는 인식하에 농업인들의 자생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농업경영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성공적인 농업경영체의 사례를 통해 ‘농업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시키고 있음
 -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을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유입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
- 농업경영체는 가족농 ⇒ 농업법인 ⇒ 농기업 단계를 거치면서 우수한 농업경영체로 성장 발전
 - 가족농, 농업법인, 농기업은 상호작용을 통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존체계가 필요
-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체의

15) 삼성경제연구소(2008), 글로벌시대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영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생산 외에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산업을 겸영함으로써 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되었음

- 수입개방 압력 등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경영의 적정 규모화, 생산성 향상, 농촌공업의 육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도입되었음

○ 농업법인 도입취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규모화 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에 있음. 즉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실현하는데 있음
- 둘째, 복합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에 있음. 즉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적 자력성장을 유도하는데 있음
- 셋째,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지속적 있는 경영체를 유지 존속 시키는데 있음. 가족농은 후계자 단절시 지속적인 농업경영이 곤란하지만, 농업법인은 조합원 중심의 조직경영체를 통한 신규사업 영입으로 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한편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농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신농업경영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활동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음
- 농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인인 상품, 프로세스, 사람의 혁신이 가장 중요함

2.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 진단

-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생산의 규모화, 기계화, 판매 유통까지 포괄하는 기업농 형태의 농업으로 변화를 이루어낸 성과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농업법인의 실태는 설립등록 후 유명무실하거나 부실경영 법인체가 속출하는 등 한마디로 ‘법인설립은 과열 상태, 법인경영은 부실상태’에 있음

- 현행법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등기만(자율설립)하면 설립되도록 되어 있음(농발법 제6조 동시행령 제7조)
- 토지 분양, 레저시설 운영 등 부적절한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간척지 농지 분양에 이용하거나 시세차익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노리는 경우가 있음
- 농업농촌기본법자체에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방법, 사업의 적격성 확인절차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함. 부적절한 농업법인 설립 차단 어려움
- 농산물 및 단순가공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가 식품위생법상 명시됨으로 인해 농업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됨
- 지금까지 농업법인 활성화가 안 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
 - 첫째, 농업법인의 경영능력 부족과 경영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둘째, 회사법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흡함
 - 셋째, 1990년 중반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값싼 수입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업법인 채산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음

3. 농업법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업법인제도와 지원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할 것임
- 현행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농업법인제도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여 제도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내용을 근거하는 민법상의 조합규정이 경제조직을 규율하기가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상 두 조직의 차이는 거의 없음
- 둘째,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이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1994~1996년에 대대적인 설립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인이 양산되자 1997년 이후 정책사업의 자격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농경영체 지원이 강화되면서 신규 법인의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음
- 셋째,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유통·가공 등의 서비스사업도 수행할 수 있어 오히려 농업법인 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함
 -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음
- 넷째, 농업법인 유통분야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때, 지역의 농업협동조합과 경쟁 및 경합관계에 서게 됨
 - 농업법인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이 유통 및 가공관련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임
- 다섯째, 농업법인의 실태파악 및 등록사항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 현재 농업법인은 법원에 설립 등기한 이후 어느 기관에서도 관리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농업법인을 컨트롤하는 관리감독기구가 없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서 개별 농업법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 장기 휴업법인, 조합원, 개별운영법인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농업법인의 운영 상황을 평가 지도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으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경영성이나 건설 운영 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농업법인들의 협회 같은 것이 가동되지 않아 자율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만 200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사업도 자율신고 방식에 의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음

제2절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

-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 한다면,
 - 첫째,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바로 고쳐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정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단체 농민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지를 모아 정책화함
 - 셋째,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방식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특히, 건전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정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이는 정책적인 측면으로서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또한 농업경영의 3가지 핵심요인인 상품, 프로세스, 사람의 혁신이 농업법인 혁신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듯이, 주체적 요인들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을 <표 IV-1> 와 같이 제도적 측면, 정책적인 측면, 주체적 측면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함

<표 IV-1> 제주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주체적 측면
1)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 2) 세제상의 지원제도 정비 및 강화 3)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시스템 4) 농업법인체 컨설팅 강화	1) 농업법인의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 2) 지역농협과의 협력관계 구축 3) 우수 인적 자원의 양성 및 지도 4) 농업법인협의회 구성 운영 5) 6차산업화 등 창의적 시책 발굴 6) 농업과 비농업연계 법인체 육성 7) 컨트롤타워 구축	1) 비즈니스 전략 정립 2)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3) 유통판매관리 4) 고객관리 5) 조직 및 인사관리 6) 재무 및 리스크 관리

1. 제도적 측면

1) 농업경영체 개념 재정립¹⁶⁾

- 농업법인제도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법인유형 등을 감안하여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향후 시대적 요구는 기존 가족농 경영체제에서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체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적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법인체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는데 있음
 - 다만 제주지역 농가가 소농 중심의 가족농 임을 고려할 때 가족농을 유지,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법인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농업정책 발굴 수립 및 6차산업화, 미래사업과 연계된 정책 제도화 필요
 - 가령,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최근 부각되고 있는 6차산업화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가공판매이외에 의료 복지, 교육과 연계된 사업들도 향후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는데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의 선진사례에 보듯이, 가족농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일반인도 농업법인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일반인도 지분참여를 통해 농업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시민 중심의 농업법인체 설립이 가능
 - 이에 대해 농업인 입장에서는 신설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특히 도시민 중심의 농업법인체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16) 김수석(2006)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 반면에, 정부나 일반인의 입장은 도시인이 농업인이 할 수 없는 농업연계 사업들을 할 수 있어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없지 않음

2) 세제상의 지원제도 강화 및 정비

○ 세제시한 연장 및 지원

- 한시적인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 필요
- 법인설립과 운영에서 자기 자본의 확충이 성공 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나 우리 농업법인들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보조금, 융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 등기부상 증자 자산이 실제로 법인체에 증자되지 않고, 법인 설립등기시 조합원 개인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임의 등기하고 있음(공증 수수료만 부담하면 자본금을 임의로 등기할 수 있음)
-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감면 확대 필요
- 가축급여조사료 생산용 비닐(필름), 화훼종자류(종구, 종묘)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면제 또는 완화 필요

○ 영농조합법인의 무한책임제도를 유한책임제도로 개선되어야 함

- 법인 경영은 가계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경영 및 자본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부채로 인해 개개인의 재산압류로 이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다거나 유한책임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 필요

3)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현재 농업법인의 실태는 한마디로 ‘법인설립은 과열 상태, 법인경영은 부실상태’에 있음

- 법인설립 자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필요

- 일부는 농업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제제수단 필요
- 현행법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등기만(자율설립)하면 되도록 되어 있음(농발법 제6조 동시행령 제7조)
- 세제상 혜택의 악용 사례 방지
 - 세제상 혜택을 노려 간척지 등 토지 분양, 레저시설 운영 등 부적절한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음
 - 농산물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기업이 자료를 손쉽게 만들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세월호사고 이후 세상에 알려진 종교단체 소유 영농조합법인 사례처럼 세제상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
- 많은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보다 이미 설립된 법인을 창업에서부터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법인체로 육성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설립이후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한 감독기능을 수행
 - 자자체가 농업법인을 상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전체를 관리하는 전문기구의 설치가 필요
 - 혁신적 농기업 평가, 우대지원체계, 수요자 위주의 바우처형 컨설팅 등의 시스템 구축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을 보완할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의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자율 신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할 경우)에 행정에서 간접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임
 - 현재 제주에는 전체 농업법인의 절반가량(제주시 203건, 서귀포시 130건)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위해 마련한 농업경영정보등록에 대하여 시행 5년이 되었는데도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음
 - 또한 제도 취지는 좋으나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시정 필요

4) 농업법인체 컨설팅 시스템 도입

-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법인 설립 이전 및 이후에 대한 컨설팅 시스템 도입 필요
 - 가칭 농업법인 one-stop 컨설팅 시스템 구축 운영
 - 컨설팅을 통해 농업, 농촌, 정책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실행가능한 사업 아이템 발굴케 함으로써 법인체의 성공가능성과 소득증대에 기여

2. 정책적 측면

1) 농업법인의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

- 비즈니스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경영인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도움을 주었음
 - 농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은 비즈니스 전략에서부터 시장접근방법, 생산 기술 확보, 유통판매 전문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외부 네트워크 구축, 재무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 비즈니스 전반적인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비즈니스 전략 개발, 시장 및 상품개발, 유통관리, 고객관리, 조직관리, 재무분석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필요
 -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관련 전문 교육기관과 지역 대학의 농업경영관련 학과와의 연계,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나 평생교육원 등의 강의프로그램 개설 필요
 - 비즈니스 수행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도 있음

2) 지역농협과의 협력관계 구축

- 지역농협 농협과 농업법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축산농가가 농업법인 설립하여 식육판매장을 개장하는 사례
 - 전문 식육판매자들과의 경쟁이 안 되고 성공할 확률이 낮음
 -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약으로 새로운 가공판매형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우수 인적 자원의 양성 및 지도교육

- 농업법인의 경우 구성원의 대부분이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가정할 때 특히 유통전문가의 양성하여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함(청솔영농조합법인)
 - 각종 장부의 기록, 경영계획 수립 등 경영회계 정보기술 등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우수 농업경영체의 경우 회계, 경영, 전산전문가 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농업인턴 훈련수당 등 지급 인력 유입프로그램 확대
 - 한시적인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 필요

4) 농업법인협의회 구성 필요

-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연합회를 구성하여 제목소리를 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듯이 농업법인협의회(가칭) 구성하여 상호교류는 물론 공동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음
 - 이업종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사업정보 및 기술교류 등을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예를 들어 농업이 살려고 하면, 유통판매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유통판매 강화 정책 수립
 - 교육을 맡고, 특허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역할 수행 필요

- 보조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짓눌려 있는 패배의식 때문으로 개혁 필요. 자체 자금을 확보하는 것로부터 출발

5) 로컬푸드, 6차산업화 등 창의적 시책 발굴

- 제주의 청정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소량 다품목으로 구성해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창의적 사업 추진 필요
 -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제주 이미지 제공에도 도움
- 함안군, 나주시, 영광군 등에서는 소규모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을 정해 자연밥상 꾸러미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 작업장 설치와 시설기반 조성, 상표 및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홍보 물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제주농업에도 6차산업화가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농업법인체의 추진사업 지원 방안 강구
 -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산업구조가 특이해 융복합산업을 발굴하기가 용이하고,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잠재수요자로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의 농업지원정책 변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되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에 설치한 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인 사업참여 독려 및 현장 맞춤형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어서 농업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직함
 - 현재 제주지역에서 6차산업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우수체험공간 12곳, 농촌교육농장 23곳, 농가수제품 사업장 31곳, 농촌체험·휴양마을 19곳, 지역전략사업 5곳, 향토산업 9곳, 농어촌자원복합화 사업 24곳 등 총 123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법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 구좌 당근, 성산 월동무, 애월 양배추 등이 정부의 6차산업화 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채소 중심 농업법인체의 집중 육성 필요

6) 농업과 비농업 연계 법인체 육성

-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제주농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무궁한 가치를 지님
 - 예를 들어 발효식품이나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업현장에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음
- 제주지역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하게 농업생산과 더불어 가공, 유통,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활용하여 농업과 비농업 연계 법인체 육성 강화 필요

7) 컨트롤타워 구축

- 6차산업화, 로컬푸드, 친환경, 발효 등 창의적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농산물 유통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센터, 6차산업화의 기술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6차산업화지원센터 등에 조직과 인력 배치 및 예산 집행 필요
- 컨트롤타워 부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농업법인과 소통 강화 필요

3. 주체적 측면

- 농업법인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서 스스로 성공적이고 지속성장하는 농업법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지원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직시하여 스스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고, 활용하려는 고민과 적극적인 자세가 농업법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

1) 비즈니스 전략

- 농산물 시장의 경영위험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 반드시 필요

- 차별적인 사업아이템 및 이를 구체화하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이나 구체적인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예: ① 푸르메: 국내 첫 혼합 잡곡 전문 농업회사법인, ② 지우: 파프리카를 가공품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에 성공한 농업회사법인, ③ 대농 : 국내 첫 새싹채소를 생산한 영농조합법인, ④ 수다원: 대왕버섯의 재배에 성공(주)농업법인 등)
- 정부로부터 수혜나 지원사업을 얻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설립하거나 정부지원금 장기저리자금이 거저 주는 공돈이라고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설립한 법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원된 용자의 상환시점부터는 법인 존립이나 운영여부가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많음
-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계획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정부 지원과 보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장기플랜을 수립하여 천천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해야 함
- 비전설정 및 공유, 목표시장 및 고객설정, 소비자트렌드 분석, 상품 및 가격등 차별화전략을 구사
 - 특히, 법인대표는 비즈니스 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사하는 핵심으로서 역할 중요
- 강인한 생존본능을 바탕으로 투자와 비용절감 노력 필요
 - 극소수의 법인을 제외하고는 절반이상의 법인들은 능력과 경쟁력이 없고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도 희박하기도 함

2)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 과거에 성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고객이 찾는 제품 개발과 생산이 필요함
 - 남다른 발군의 실력과 많은 노하우로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지기 보

다는 타 분야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꾸준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돈 빨리 벌어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도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생산 신기술확보,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생산효율성 확보, 제품차별화, 생산시설확충, 생산관리시스템 확보 등의 전략 구사 필요

3) 유통판매 관리

- 생산과 유통의 역할이 나뉘져 있지만 농업생산자도 ‘재배만 잘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 지속성장하는 농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가 확보 필수

- 직거래 유통망 구축에서부터 글로벌 시장 개척¹⁷⁾ 등의 다각도의 유통판매지식을 터득하고, 전략 수립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아그리젠토¹⁸⁾ 3.0 본격적인 수출 시장 개척

아그리젠토 1.0 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아그리젠토 2.0 산업화 도모

아그리젠토 3.0 기술력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수출시장 개척

- 구체적으로 판매루트 다양화, 판매관리시스템, 신규시장 확보, 대량수요처 개발, 물류 유통조직확대, 협상력 증대 등의 전략 구사 필요

4) 고객 관리

- 농업법인 입장에서 고객은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기술자, 조직관리자, 기업인, 행정기관 공무원 등 다양함

17) 네덜란드는 농업의 미래를 수출에서 돌파구 찾고 있으며, 네덜란드 농민은 그냥 상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강한 상인 정신이 네덜란드 농업수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1990년대부터 유럽의 겨울철을 겨냥하여 토마토 등 품목을 수출하는 등 수출농업정책 구사하고 있다. 이스라엘 농업기술자들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린 뒤 자발적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18) 기원전 6세기 첨단 농업기술로 부를 축적한 그리스의 농업도시

- 농사꾼이라 농사만 신경 쓴다는 사고를 버리고, 법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 파악, 고객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

5) 조직 및 인사 관리

- 조직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므로 일정한 크기의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 내 유통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생산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농업법인이 생산과 유통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담당했던 구성원과 유통분야 구성원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 전문가 확보는 필수임
- 농업법인 출범 시 공동체적인 농업경영을 모토로 하지만, 시일이 흐를수록 공동체적인 정신이 훼손되고 소멸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구성원간의 역할 및 책임,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경영 추진이 매우 중요함
- 조직 비전설정 및 공유, 의사결정권의 위임, 업무조정 및 관리시스템, 업무처리절차 표준화, 커뮤니케이션 원활화, 대외 네트워크 구축, 표준 매뉴얼 제정, 관리비용, 갈등관리, 네트워크 확대, 조직구성원 교육체계 확보, 전문인력 확보, 체계적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 구사 필요

6) 재무 및 리스크 관리

-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주위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함
- 또한 남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금물
- 구체적으로 유동성관리, 투자위험관리, 비용편익분석, 원가계산 및 가격책정, 비용구조개선 등의 전략 구사 필요

참 고 문 헌

- 김수석(2006),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 김정호(2012), 농업법인은 한국농업의 활로 -농업 CEO를 위하여-, 도서출판 목근통
- 김태곤 외(2013), 기업의 농업참여실태와 상생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철호 외(2011), 농업법인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즈니 역량개발 방안
- 농촌경제연구원(2011), 선진 농업금융 사례분석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
- 농림수산식품부(2014), 농업법인 관련 안내서
-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선정계획
- 박석두 외(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외(2011), 선진농업금융사례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08), 글로벌시대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 이재진(2008), 한국 농업법인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통계청(2013), 2012년 기준 농어업인조사보고서(<http://kosis.kr/>)
- 한국세무학회(2010), 농·어업법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부 록

■ 부록1: 세제혜택 내용

1. 소득에 대한 감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감면) 2015.12.31.이 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 에 한함	■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조특법 제66조 1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농업소득 외의 소득), 즉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항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소득 중 각 사업연도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 $\{1,200 \text{ 만 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text{ (조특법 시행령 제 62조 1항)}$ ❖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 식량 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농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하여 전액면제(조특법 제 68조 1항) ■ 대통령령(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정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감면(최저한세 적용) (조특법 제68조 1항, 조특법 제6조 1항) ❖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으로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가 감면됨

- 상기 법령으로 정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이라 함은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음(일반 과세 대상)

2.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면제.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내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조특법 제66조 제5항)	좌동(조특법 제68조 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식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음(조특법 제66조 제7항)	- 좌동(조특법 제68조 제3항) - 이월과세는 개인이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산출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배당소득세 면제(감면)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조특법 제66조 2항) -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 중 연간 조합원당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5%저율부과세 되며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부과되지 않음 -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조특법 제66조 2항 및 3항/동법 시행령 제63조 2항 및 3항)	- 좌동(조특법 제68조 4항) - 농업소득 외의 소득(기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조특법 제68조 4항/동법 시행령 제65조 2항) - 기타소득(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중 법인세 면제 항목 참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함.

-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특법시행령 제63조제4항에 의거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함)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 상기 현물출자는 조특법시행령 제63조제5항에 의거 현물출자하므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단 동법 시행령 제4항 각호의 농지는 제외

3.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3호)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장저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좌동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 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32종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좌동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제1항)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양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 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 농업용기자재 등(붙임별표 참조)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 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별규정('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좌동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 농업용 필름 및 그 부속자재	24. 축사 악취제거기
2. 농업용 파이프	25. 「약사법」에 다른 동물용 의약품
3. 농업용 포장상자	26. 농작물 지주대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27. 무인용 헬리콥터
5. 과일봉지	28. 농업용 로더(2톤 미만)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막·차광지 및 은박지	29.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7. 차광막	30. 동력제초기
8. 농업용 부직포	31. 농업용 고압세척기

9. 농업용 배지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32.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이하)
10. 축산업용 톱밥	33. 농·축산용 환풍기(콘트롤포함)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34.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12. 농업용 양수기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13. 벼씨발아기	36. 축산용 정액 희석제
14. 동력배토기	37. 축산용 인큐베이터
15. 동력에취기	38.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16.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39.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17. 화훼용 종자류	40. 축사용 쿨링패드
18.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함)	41. 축사용 워터컵
19. 버섯재배용기	42. 축사용 바닥재(철재바닥재만 해당)
20.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43.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만 해당)
21. 폐사축처리기	44. 화훼재배용 배지
22. 축사세척기	45. 화훼재배용 화분
23. 카우브러쉬	46. 유해동물(해충포함) 포획기

4.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1항 및 2항)	■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15.12.31까지)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5.12.31까지)	■ 좌동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제1항)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15.12.31까지)	■ 좌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10조제1항)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15.12.31까지)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립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 좌동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좌동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지방세법 제267조제3항) (주) 다만,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하여 면제하지 아니함	좌동
--	--	--

5.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구분	농업법인 지원대상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근거: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	-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의 감면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특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췌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638. ‘13.6.28) (농업법인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지원 대상 시설 및 기계류(별표 가, 나, 다 참조) ❖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42호. ‘13.3.2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9. 주행형 탈곡기	17. 동력절단기
2. 농업용 트랙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8.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3. 동력이앙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9. 농업양수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	12. 동력수확기	20. 동력예취기
5. 고속분무기	13. 농산물건조기	21. 동력탈곡기
6. 바인더	14. 관리기	22. 동력배토기
7. 콤바인	15. 동력이식기	
8. 곡물건조기	16. 농업용난방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5. 목재파쇄기	9. 동력임내차
2. 임업용 동력천공기	6. 톱밥제조기	10. 타워야더
3. 임업용 윈치	7. 자동지타기	
4. 임업용 동력집재기	8. 동력상하차기	

▣ 부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4. 05. 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9][시행일 2011.9.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과태료

-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1.3.9][시행일 2011.9.10]

1.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에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2.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과태료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등록을 원활히 하고, 등록정보(변경등록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농장·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정보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벌칙규정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093호)]]
-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3.3.23 제 11694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4.26]]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4.26]]
-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 (직접지불금)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②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한다. [개정 2011.3.9][시행일 2011.9.10]
- ②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시행일 2011.9.10]

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 ①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 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 2009.11.28]]
-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시행일 2014.11.21]]
-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 경영·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업 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③ 제1항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④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태료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1.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부록3: 설문지

ID□□□□

제주지역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에서 기업농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공 영 민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승 철 박사(☎ 726-6213)

☐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① 법인대표	② 간부	③ 조합원
법인명		주소	_____시 _____읍면
대표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 사업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 농업법인 설립년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설립년도: _____ 년

2. 귀 농업법인 유형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영농조합법인 ②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③ 기타

3. 귀 농업법인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경영규모 확대 ② 노동력 부족 해소 ③ 농산물 가공 판매
④ 시설 및 농기계 공동이용 ⑤ 보조금 수혜 ⑥ 기타()

4. 귀 농업법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농축산 생산 ② 농축산 가공 ③ 농축산 유통
④ 영농대행 ⑤ 시설 및 농기계 임대 ⑥ 기타()

4-1. 위 사업 중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사업 하나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농축산 생산 ② 농축산 가공 ③ 농축산 유통
④ 영농대행 ⑤ 시설 및 농기계 임대 ⑥ 기타()

5. 귀 농업법인의 주요 생산 품목은 무엇입니까?

- ① 쌀 ② 채소 ③ 과수 ④ 화훼
⑤ 특작 ⑥ 축산 ⑦ 복합 ⑧ 기타()

5-1. 귀 농업법인의 생산품 판매방법 및 판매지역을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방법	① 직판장	② 공판장	③ 계통출하	④ 위탁판매	⑤ 도매시장
판매지역	① 제주지역	② 전국	③ 수도권	④ 수출	⑤ 기타()

6. 귀 농업법인은 출자금을 어떻게 증액하는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이익증여금 적립 ② 출자자 확대 ③ 개별 출자 증액 ④ 기타()

7. 귀법인 출자자(조합원)는 법인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개별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만 종사(출자자 공동경영)
 ② 개별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법인에 종사하는데 법인대표자는 단독으로 하고, 그 외 출자자는 종업원으로 참여
 ③ 개별영농과 농업법인 경영에 모두 참여
 ④ 개별 영농위주로 법인대표자 구분없이 농업법인은 명목상 존재
 ⑤ 농업법인 대표자가 단독으로 경영하고, 나머지는 명목상 조합원인 상태
 ⑥ 기타()

☐ 농업법인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매우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9. 농가에 비해 농업법인이 유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규모 확대 ② 기술개발 ③ 가공 ④ 판매

- ⑤ 정책지원 ⑥ 경영 효율 ⑦ 노동력 부족 해소 ⑧ 부대사업 경영
⑨ 기타()

10. 귀 농업법인 설립 후 목표 달성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과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소득향상 측면	①	②	③	④	⑤
2) 인력확보 측면	①	②	③	④	⑤
3) 자금조달 측면	①	②	③	④	⑤
4) 종합	①	②	③	④	⑤

10-1. 현재 운영방식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역할분담과 책임범위 ② 신속한 방침 결정 ③ 명령계통 철저
④ 조합원 의사 반영 ⑤ 기타()

11. 귀 농업법인 경영성과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과만족도				
	매우만족 (매우 희망적)	만족 (희망적)	보통 (현상유지)	미흡 (불투명)	불만 (비관적)
1) 현재의 성과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전망	①	②	③	④	⑤

11-1. 만일 경영성과에서 진전이 있다면 어느 부문인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규모 확대 ② 기술개발 ③ 판로개선
④ 자금 확보 ⑤ 사업의 복합화 ⑥ 기타()

12. 경영상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금 부족 ② 경영 및 관리능력 부족 ③ 조합원간의 의견 불일치
④ 출자 및 공동자산의 부족 ⑤ 기타()

☐ 농업법인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조건 등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원정책사업의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지원조건	①	②	③	④	⑤
2) 대상자 선정과정	①	②	③	④	⑤
3) 사후관리 및 평가	①	②	③	④	⑤

13-1. 농업법인 지원정책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제점과 개선방향

14. 귀 농업법인은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셧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③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14-1. 귀 농업법인과 지역농협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상호 협조관계 ② 협력관계를 원하나 지역농협에서 배타적
③ 상호 경쟁관계 ④ 협력을 원하지 않음(지역농협에서 호의적일지라도)
⑤ 특별한 관계가 없음

14-2. 귀 농업법인의 농협사업 이용시 만족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농협사업에 대한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구매사업	①	②	③	④	⑤
2) 판매사업	①	②	③	④	⑤
3) 공동사업	①	②	③	④	⑤
4) 사업자금	①	②	③	④	⑤

15. 현행 농업법인의 조직형태는 영농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다양한데, 귀 법인이 현재 법인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현재 법인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현행 법인형태를 선택하게 된 동기(이유)_____

현행 법인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_____

16. 농업법인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선사항_____

건의사항_____

☐ 지역 특화자원의 6차산업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최근 1차, 2차, 3차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산업화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판매와 같은 6차산업화 의향이 있으신지, 또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신지 체크(✓)하여 주십시오.

1) 6차산업화 의향 여부			2) 조직 여부	
① 있다	② 보통	③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7-1. 6차산업화 특화단지가 지정된다면 참여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의향 있다 ② 의향이 있는 편임 ③ 보통
④ 의향 없다 ⑤ 전혀 의향 없다

18.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소중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ABSTRACT>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Activating Pla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in Jeju

Han, Seung-Cheol Hwang, Yong-Jin

In Jeju areas, the primary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has a 17.9% of GRDP. As agricultural markets is extremely high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area, jeju ne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in terms of regional economy maintenance and activ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agricultural structure and external environment, Farming corpor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ver 24 years in korea in response to that. Agriculture corporation that was introduced as part of th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agriculturein have increased gradually recently from 2010. According to the data,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2 at 12, 981, and Jeju has 693.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polic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through researching and analysing of the Jeju local Corporation's situation(a combination of corporate farming,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

To do this, we conducted to study the literature-based agricultural firm and foreign policy trends, to do statistical analysis of Jeju-do' local agricultural Corporation, by taking the NSO data, to visit investigating advanced agricultural Corporation of Gyeonggi-do and to survey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in Jeju area.

As Jeju local agricultural Corporation promoted, collaborative and corporate management of agriculture will benefi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jeju agriculture and revive local economy. Agricultural management would have to pay the multifaceted efforts for streamlining of management, as they are management body of making profits.

연구진

연구책임	한 승 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	황 용 진	IMC컨설팅 고문
	황 인 평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본연구 2014-04

제주지역 농업법인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인 || 공 영 민

발행일 || 2014년 6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시 아연로 253

전화 : (064) 726-0500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di.re.kr

인쇄처 || 하나CNC

ISBN : 978-89-6010-367-2 935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